

日本の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研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

2000. 12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目次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내용	7
I. 연구의 목적	7
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
제 2 장 일본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 및 특색	11
I.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및 입법배경	11
1.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11
2. 민사재생법 제정의 입법배경	14
II. 민사재생법의 특색 및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18
1. 민사재생법의 특색	18
2.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25
제 3 장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	29
I. 서 설	29
1. 민사재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9
2. 재생사건의 관할법원	30
3.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의 열람등	30
4. 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32
II. 재생절차의 개시	33
1. 재생절차의 개시	33
2. 절차개시전의 채무자재산의 보전조치	35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35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36
5.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효력	37

6.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38
7. 재생채무자의 영업등의 양도에 관한 법원의 허가	39
8. 영업양도에 관한 대체허가	40
III. 재생절차의 기관	41
1. 개 요	41
2. 감독위원의 감독	42
3. 감독위원에 의한 부인권행사	43
4.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44
5. 관재인에 의한 관리	44
6.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46
IV.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 · 일반우선채권 · 개시후 채권	47
1.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47
2.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등	48
3. 재생채권의 신고	48
4.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50
5.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認否書	50
6. 재생채권 査定의 재판과 이의의 소	52
7. 재생채권의 확정	53
8. 채권자집회의 소집	54
9. 채권자위원회	54
10. 공익채권	55
11. 일반우선채권	56
12. 개시후 채권	57
V.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
1. 재산상황보고집회	58
2. 否 認	5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61
4. 담보권소멸제도의 취지	63

5. 담보권소멸의 절차	64
6. 가액결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재산평가	65
VI. 재생계획	67
1. 개요	67
2. 재생계획의 조항의 내용	68
3. 미확정채권등의 취급	69
4. 재생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71
5. 재생계획안의 작성자 및 제출자	72
6. 재생계획안의 결의	72
7. 재생계획안의 가결요건	73
8. 재생계획의 인가·불인가 결정	74
9.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변경	75
VII.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76
1. 재생계획의 이행확보	76
2. 재생계획의 취소	77
VIII. 재생절차의 폐지	79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79
2.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경우의 폐지	79
3.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폐지	80
4.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80
IX.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81
X.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	82
1. 제도의 취지	82
2.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의 차이	83
제 4 장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85
I.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85
1. 민사재생사건의 건수	85
2. 재생채무자의 실태	85

3. 절차의 진행상황	87
II.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91
1. 예납금의 납부	91
2. 보전처분의 결정과 감독위원의 선임	92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조사	92
4. 개시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	93
5. 관재인의 선임 유무	93
6.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	93
7.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	94
8. 담보권소멸청구	94
9. 부인권의 행사	95
10. 영업양도의 허가	95
11. 채권조사	96
12. 이행의 감독	96
제 5 장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	97
<참고문헌>	101
일본 민사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	103
민생재생규칙(2000년 1월 31일 최고법원규칙 제3호)	175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내용

I. 연구의 목적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산절차의 신속·원활화 및 도산법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1998년 12월과 1999년 12월의 2회에 걸쳐 도산법 즉,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도산법 개정은 특히 중·대규모 기업의 갱생축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에 중점을 둔 것이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갱생가치개념의 도입, 개시결정시기의 조기화 및 정리계획제출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절차기간의 단축, 관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한 법원의 업무부담 완화 기타 화의절차 개시신청 기각요건의 확대등 화의신청 남용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파산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 개정작업에 있어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도산되었거나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대규모 기업의 갱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감은 한편으로는 시급하게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제외한 여타의 도산절차의 정비라든가 도산절차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1998년과 1999년의 두차례의 도산법 개정은 일응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규모에 차이가 있고 형태가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 그 특성에 맞게 이용할 만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그리고 ‘도산기업이 과연 사적 정리가 아닌 도산절차를 이용할 만한 동기 내지는 실익이 있는가’ 등의 몇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일본은 우리와 경제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역시 1991년 이후 이른바 버블경제의 붕괴과정을 겪으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인 및 법인의 도산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와 업계 및 학계등은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종래의 도산절차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일본 법무성이 주관이 되어 1996년부터 도산법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개정작업은 5년을 예정으로 2001년까지 준비작업을 마치고,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일정을 변경하여 1999년 12월 민사재생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 현재 ‘개인갱생절차에 관한 요강’과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요강’을 확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재생법은 일본에서 기업도산사건이 점증하는 최근의 긴급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그 입법화를 앞당긴 것인데, 재건형 도산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종래 일본의 3대 갱생절차인 회사갱생절차,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의 운용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대폭 시정하고 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도산절차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당면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우리의 도산법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사한 경제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산법제를 정비했던 각국의 예를 가장 최근까지 목도하고 이를 분석·검토한 후에 이루어진 입법이란 점에서, 향후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작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¹⁾

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일본의 도산법제 개선작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과 민사재생절차의 특색을 살펴본다. 민사

1) 일본 민사재생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민사재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술·판례를 통한 깊이 있는 법리구성이나 주목할 만한 제도비판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이 연구에서는 관련법리나 제도비판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작업에 일본의 민사재생법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특히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이들 내용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법의 입법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본 법무성의 주요법률 입법과정도 아울러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와 논의의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다. 또한 민사재생절차의 특색에 있어서는 특히 화의절차와 대비되는 부분과 민사재생법의 개요 및 민사재생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의 운용현황등을 검토한다.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 분석에서는 법률편재에 따라 민사재생법의 목적·적용범위·관할등, 재생절차의 개시, 재생절차의 기관,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일반우선채권·개시후 채권,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재생계획,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재생절차의 폐지,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간이재생·동의재생의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종래 일본의 화의법 및 회사갱생법과 대비해가며 이들을 분석한다. 또한 운용현황등의 검토에서는 동경지방법원의 재생절차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절차운용상의 문제점등을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 도산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향후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을 언급한다.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내용

제 2 장 일본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 및 특색²⁾

I.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및 입법배경

1.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1) 민사재생절차에 관한 요강의 확정

일본 법무성에서의 기본법에 관한 입법작업은 법무장관이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대하여 자문하고 법제심의회로부터 답신으로 要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도산법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1996년 10월에 개최된 법제심의회 총회에서 법무장관이 ‘파산, 화의, 회사갱생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요강을 제시해달라’는 자문(자문 제41호)이 있었다. 이러한 자문을 받은 법제심의회는 도산법제 전체의 개선에 관하여 심의를 개시하고 이를 위한 특별부회로서 ‘도산법부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개선작업은 개시당시 5년을 예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6년차인 2002년에 관계법안을 정기국회에 일괄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개선작업을 담당했던 도산법부회는 계획에 따라 작업의 1단계로 우선 900여개 조문에 달하는 도산법제 전체에 대하여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논점을 정리하고, 1년여의 심의·검토를 거쳐 1997년 12월에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모은 『도산법제에 관한 개정검토사항』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각계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그러던 차에 정부의 경제대책자료회의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상황하에서 도산사건이 격증하는 경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98년 4월 작성한 ‘종합경제대책’에서 ‘도산법제의 조기정비’가 시책의 하나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도산법부회는 1998년 7월 도산법제의 조기정비를 의도하고 있는

2) 이하의 내용은 ‘深山卓也・花村良一・筒井健夫・管家忠行, “民事再生法の要點(1)・(2)・(3)・(4)”, NBL No. 680・681・682・683, 2000.1.1~2.15; 深山卓也, “民事再生法制定の経緯と法の概要”, JURIST No. 1171, 2000.2.1; 伊藤 眞, “民事再生法の概要”, NBL No. 682, 2000.2.1’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래의 일정을 수정하여 검토기간을 1년여 단축하였다. 동시에 부회 중에 주로 개인도산절차를 검토하는 제1분과회와 법인도산절차를 검토하는 제2분과회를 두어 각 분과를 2주간마다 교차적으로 개최하는 외에 3~4개월마다 부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도산법부회는 1998년 9월 중소기업의 도산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도산법제 중 특히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등에 이용이 용이한 재건형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과제와 분리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1999년중에 해당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였다. 그 후 제2분과회에서는 민사재생절차와 공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파산절차의 문제점과 민사재생절차 고유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1999년 4월부터는 검토의 장을 도산법부회로 옮겨 매월 2회의 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회에서는 각론적인 문제점에 관한 제2분과회의 검토결과에 입각하여 사무당국이 작성한 요강안을 심의·검토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 제15회 도산법부회에서 『민사재생절차(가칭)에 관한 요강안』이 결정되었고, 법제심의회는 이러한 부회의 결정을 받아 동년 8월 개최된 총회에서 『민사재생절차(가칭)에 관한 요강』을 결정하고 법무장관에게 답신하였다.

(2) 민사재생법안에 관한 일본 국회에서의 심의

민사재생법안은 법무장관에게 답신된 요강에 기초하여 그 법안작업이 진행되었고, 1999년 11월 5일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11월 8일 제146회 국회에 제출되었다(내각제출법안 제64호). 동법안은 11월 17일 중의원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개시되었다. 심의중에는 법제심의회 도산법부회장인 竹下守夫 駿河大 학장을 포함한 3인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이에 대한 질의가 행해졌다. 중의원법무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대상이 된 것은 제42조의 영업등³⁾ 양도의 허가제도, 노동채권의 절차상의 취급,

3) 민사재생법 제42조에서는 보다 정확하게는 ‘영업 또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민사재생법이 규모를 불문한 법인 및 개인은 물론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인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절차관여,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보호, 담보권소멸제도등 이었다. 특히 영업등 양도의 허가제도에 관하여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기업의 해체청산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 종업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허가제도를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에 허가요건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그 결과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등 양도의 허가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이라고 하는 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항 후단에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당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취지의 수정안이 여당3당(자유민주당, 공명당 및 자유당), 민주당 및 사회민주당의 공동안으로 제출되었고, 12월 3일 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및 수정부분을 제외한 법안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며, 12월 7일 의원본회의에서도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2월 8일 민사재생법안은 참의원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심의가 개시되었고, 12월 13일에는 법무위원회에서 중의원의 수정을 포함한 법안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며, 12월 14일에는 참의원본회의에서도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법률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위의 일련의 국회심의과정 중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참의원법무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및 최고재판소는 본법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단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① 본법이 재건형도산절차의 기본법으로서 폭 넓게 이용되도록, 그 취지·내용·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등을 사법관계자·경제단체·노동단체등은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충분히 주지시키는데 철저하게 노력할 것
- ②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민사재생절차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체제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 ③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등의 양도에 관하여는 재생채무자의 사

업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행하여진다는 것을 철저히 주지시켜, 이 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할 것

- ④ 기업조직의 재편에 따른 노동관계의 재편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검토를 행할 것
- ⑤ 도산법제 전체의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채권, 담보부채권, 조세채권, 공과채권등 각종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제외국의 법령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선을 행함과 동시에 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채권에 대하여 특히 재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그 우선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배려를 할 것
- ⑥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생채권의 변제등과 관련하여 재생채무자를 주요한 거래처로 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의 계속과 그 종업원의 노동채권 확보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주지시키고 철저히 노력할 것
- ⑦ 본법이 화의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경위에 입각하여 민사재생절차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개선을 행할 것
- ⑧ 금후 도산법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도산법제의 통일성·정합성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파산법의 발본의 개선을 개시하고, 개인채무자갱생절차, 국제도산절차, 도산실체법등 도산법제의 개혁을 진행할 것
- ⑨ 도산절차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등의 부담을 포함하여 관련시책의 정비 및 충실화에 노력할 것」

2. 민사재생법 제정의 입법배경

(1) 종래의 재건형도산절차와 그 문제점

일본의 도산법제는 민사재생절차의 도입 이전까지,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재건형도산절차로서 ① 1952년에 제정되어 1967년에 큰 폭의 개정이 행하여진 회사갱생법상의 갱생절차, ② 1938년 상법 대개정시 도입된 상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그리고 ③ 1922년 제정된 화의법상 화의절차의 개

절차를 두고 있었다.⁴⁾

일본에서는 이른바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 이후 도산절차의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산기업의 99%이상을 중소기업이 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현행의 3개 재건형도산절차에 의하여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회사갱생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기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재건형도산절차로서, 관재인이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장악하고 필요에 따라 부인권의 행사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추급등을 하면서, 채권조사·확정절차 및 재산평가절차를 거쳐 갱생계획안을 작성한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회사갱생절차에 의하여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① 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다.
- ② 관재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되고 기존 경영자의 퇴진이 사실상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나 신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
- ③ 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등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모든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시켜 그 이해를 조정하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및 비용의 부담이 무겁다.⁵⁾

4) 1999년 12월 민사재생법이 제정되어 2000년 4월 시행되면서 화의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일본에는 도산절차로 파산, 화의, 회사갱생, 회사정리 및 특별청산의 5개 절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중 파산법과 화의법은 각각 독일법과 오스트리아법을 모범으로 하여 1922년에 제정된 것이고, 회사갱생법은 1952년에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 또한 회사정리와 특별청산절차는 1938년 상법 회사편의 대개정시 즈음하여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절차로서 상법 중에 도입된 것으로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들 절차 중 파산과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형도산절차이고, 화의, 회사갱생 및 회사정리절차는 재건형도산절차이다. 일본의 파산, 화의, 회사갱생, 회사정리 및 특별청산절차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최성근, 일본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8-9, 1998.12'를 참조할 것.

5) 이상의 일본 회사갱생절차의 문제점은 우리의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정리절차는 사적 정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것에 법적 형식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공평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의(정리)의 성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각종의 법적 조치가 인정되는, 간이하고 유연하게 주식회사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① 회사갱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 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나뉘어 있고 그 조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 ③ 채권자의 다수결원리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전체권자가 재건계획(정리)에 동의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채권자의 반대에 의하여 재건이 곤란해질 수 있다.

끝으로 화의절차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가 사업의 경영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채권자다수결의 동의에 의한 권리변경에 의하여 채권자의 재건을 도모한다. 또한 화의절차에서는 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없고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그 금액을 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간이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의절차에는 절차의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절차개시후에도 채무자가 사업경영권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 절차가 간이하다는 점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래의 일본 도산법제하에서 중소기업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화의절차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화의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⁶⁾

- ① 일본의 화의절차에서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가 화의절차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⁷⁾

6) 이하의 일본 화의절차의 문제점은 화의개시원인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화의절차상의 문제점과 대동소이하다.

7)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화의법은 1998년 12월 개정시 화의개시요건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 외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 바 있다(화의법 제12조제1항).

- ② 절차의 신청과 동시에 재건계획안(화의조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도산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래를 예측하여 적정한 화의 조건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③ 채무변제금지의 가처분을 받아 자신은 수표부도를 면하고 하청업자를 시발로 하는 연쇄부도를 초래하면서, 자신이 위기상황을 면하게 되면 신청을 취하하는 ‘보전처분의 남용’이 자행될 수 있다.
- ④ 담보권자는 화의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요한 재산이 산일되고 재건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 ⑤ 화의가 성립하면 절차는 종료하고 화의조건의 이행을 감독할 자가 없다는 것, 화의조건을 기재한 채권표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것, 또 양보취소제도라든가 화의취소제도가 있는데 전자는 그 효력이 약하고 후자는 신청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⑥ 파산관재인 또는 갱생관재인과 같은 관리기관을 선임하는 제도가 없어 채무자의 사업경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

(2) 신법제정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갱생절차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그 기본적인 구조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갱생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법인 및 개인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화의절차의 문제점도 다기하게 펼쳐져 있고 무엇보다도 절차의 주요쟁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화의법의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충분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의 법무성등은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재건형도산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하여 회사갱생절차의 이점을 갖춘 새로운 절차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절차의 기본법으로 민사재

생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민사재생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적 흠결이 많은 화의법(특별화의법 포함)을 폐지하였다(부칙 제2조 참조).

또한 회사갱생법은 대규모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재건형도산절차인 회사갱생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금후에도 민사재생법과는 별도로 존속시키고, 도산법제의 개선은 개별제도별로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 한다. 한편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회사정리절차는 민사재생법이 시행된다면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산법 부회에서도 다수를 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사정리절차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간이하고 유연한 절차로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사재생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곧 바로 폐지하지 아니하고 그 존폐는 향후의 상황등을 보아가면서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하였다고 한다.

II. 민사재생법의 특색 및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1. 민사재생법의 특색

가. 민사재생법의 특색 일반 - 특히 화의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재생법은 ① 중소기업등의 재건에 용이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고, ②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고 투명하며, ③ 현대의 경제사회에 적합한 신속하고 기능적인 재건형도산절차를 창설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의 몇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의 재건에 용이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는 절차

① 절차이용대상자

민사재생법은 민사재생절차의 이용대상자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한회사등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물론, 학교법인·의료법인등의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② 절차개시시기의 조기화

우리 화의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 화의법상의 화의절차에서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절차개시원인이었지만(일본 구화의법 제12조제1항), 재생절차에서는 절차개시원인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면 파산원인이 없더라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③ 관할의 특례

모자회사의 민사재생사건 및 법인과 그 대표자의 민사재생사건에 관하여는 관할의 특례를 두어, 동일한 법원에서 동시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제3항 및 제4항).

④ 자력재건형절차

화의절차에서는 관리기관을 선임하는 제도가 없어 기존의 경영자의 사업경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였다.

민사재생절차는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력재건형의 절차로서(제38조제1항),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경영자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등 사업의 재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재인(제64조제1항)등의 기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있다.

⑤ 보전처분의 충실화 및 남용방지

화의절차에서는 절차개시전의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일본 구화의법 제20조). 재생절차에서는 가압류·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제30조)에 더하여 강제집행등의 중지명령(제26조)·포괄적 금지명령(제27조)·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제31조)·보전관리명령(제79조)등을 두어, 보전처분의 충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

우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여(제32조) 그 남용방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

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방지

민사재생법은 회사갱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부인제도((제127조 내지 제141조)를 두어 일부채권자에 대한 불평등행위를 시정함과 동시에, 임원의 민사책임을 간이·신속하게 추급하는 사정제도등을 채용함과 아울러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제142조 내지 제147조 및 제210조), 경영자의 도산 전·후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추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채권자위원회제도의 도입

민사재생법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채권자위원회에 절차상 각종 권한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절차관여를 강화하고 있다(제118조).

③ 재생계획 이행확보조치의 충실화

화의절차에는 재건계획(화의조건)의 이행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재생절차에서는 채권조사·확정절차를 두고 재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채권자표의 기재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80조제3항).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재생계획의 성립후에도 감독위원회에 의한 감독이나 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8조제2항 및 제3항). 더욱이 재생채무자가 재생계획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불이행되고 있는 채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생계획의 취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청인의 요건을 화의의 취소와 비교하여 대폭 완화하고 있다(제189조).

④ 정보개시제도의 충실화

민사재생법은 종래의 도산법제에서 불비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건관계서류의 열람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제17조).

(3) 현대 경제사회에 적합한 신속하고 기능적인 절차

① 절차구조의 간소·합리화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담보권부채권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을 제외한 채권(무담보일반채권)으로 한정함과 동시에(제 84조, 제88조, 제119조 및 제121조), 재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자본구성 기타 조직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구조를 간소화하고 있다(제154조 및 제166조). 또한 필요적 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관재인 뿐만 아니라 감독위원, 조사위원등 절차기관을 임의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기관을 구성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더욱이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조사절차에 대신하는 서면에 의한 이의제도(제100조 내지 제103조), 채권확정의 결정에 의한 사정절차제도(제105조) 및 재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제도(제172조)를 도입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절차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② 재건계획안 작성시기의 탄력화

화의절차에서는 절차개시의 신청과 동시에 재건계획안(화의조건)을 제출하여야 했지만(일본 구화의법 제13조제1항), 재생절차에서는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건계획안(재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족하도록 하고 있다(제163조).

③ 담보권에 대한 제약

화의절차에서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가 되고(일본 구화의법 제3조 참조)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재생절차에서는 법원은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고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더욱이 담보권의 대상인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 때에는, 재생채무자등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8조이하).

④ 영업양도 및 자본감소에 관한 특칙

재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조직법적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계속의 수단으로 영업양도를 행하거나 새로운 출자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자본감소등을 행하는 것은 사업의 재생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측면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중의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상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과 동시에(제42조), 영업양도 또는 자본감소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①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대신하는 법원의 대체허가제도(제43조)를 도입하고 ②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감소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4조제3항·제166조).

⑤ 간이재생제도 및 동의재생제도의 도입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계획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간이재생제도. 제200조이하)와 채권조사·확정절차 및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생략하고 곧 바로 재생계획의 인가에 상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동의재생제도. 제206조이하)를 도입하여, 소규모의 사안이나 사적 정리가 선행된 사안등에 대하여는 간이·신속한 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⑥ 국제도산사건에의 대응

재생채무자의 재산이 국외에 존재하는 사안이나 국제병행도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제89조 및 제196조 내지 제199조).

8) 민사재생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담보권 및 우선채권의 취급

(1) 담보권의 취급

재생절차에서는 절차의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담보권부채권이나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⁹⁾에는 절차의 제약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의 비우선인 일반채권(재생채권)에 대해서만 재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을 가하여 재생채권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채권자의 재산상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또는 상사유치권을 가진 자는 별채권자가 되고, 별채권자는 재생절차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53조).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두지 아니한다면, 재생채권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없어져서 재생채권자의 재생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에는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가 담보권자와 교섭하여 변제조건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제31조제1항), 나아가 담보의 목적이 되는

9)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란 민사재생절차에서 일반우선채권으로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제122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노동채권(일본 민법 제306조제2호·제308조, 일본 상법 제295조 및 일본 유한회사법 제46조제2항 참조), 조세채권(일본 국제징수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14조 참조) 또는 기업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社債(일본 기업담보법 제2조제1항 참조)와 같이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실제법상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深山卓也·花村良一·筒井健夫·管家忠行·坂本三郎, 問答式 民事再生法, 商事法務研究會, 2000.3, 155면. 다만, 이 중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일반우선채권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예컨대, 노동채권이라도 재생절차개시후에 발생한 것은 일반우선채권이 되지 아니한다(제119조제2호 참조).

한편 우리법상으로는 ‘선취특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에서 ‘우선특권(회사정리법 제123조 및 제210조 참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민사재생법상의 ‘선취특권’을 우리 회사정리법상의 ‘우선특권’과 동일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8조 내지 제153조). 재생절차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보장하고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88조). 그리고 당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제182조 본문),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별제권 중 원본이 확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 중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변제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생계획에 따라 최고액 초과분에 대응하는 정리계획상의 변제액을 가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2조 단서 및 제160조제2항).

(2) 우선채권의 취급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으로서(제122조제1항),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22조제2항). 즉, 일반우선채권은 재생채권과는 달리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하며, 재생채권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에 기초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선취특권의 행사로서의 경매도 가능하다. 다만,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채권에 기초하는 강제집행등이 행하여진 경우 ① 당해 강제집행등이 재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재생채무자가 달리 환가에 용이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2조제4항 및 제121조제3항 내지 제6항).

또한 일반우선채권은 채권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대상도 아니다. 제154조제1항에 의하여 정리계획에는 일반우선채

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도 정해져야 하지만, 이 규정의 목적은 재생계획에서 재생채무자가 금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채권자가 재생계획의 당부 및 이행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재생절차는 재생채무자(민사재생법 제2조제1호)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계속하면서 재생계획을 입안하고, 채권자의 법정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가결된 재생계획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보전처분의 발령(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79조)

먼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절차개시원인(제21조) 및 절차개시조건(제25조, 신청의 기각사유)의 존부여부를 심리한다. 이러한 심리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채무자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79조)이 행하여질 수 있다.

(2)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제33조 내지 제35조)

법원은 개시원인이 있고 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절차개시의 결정을 한다(제33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재생채권자는 재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변제등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조).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생채권자의 재산의 관리·처분등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한을 갖는 감독위원을 선임하거나(제54조), 재생채권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이 잘못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64조).

(3) 재생채권의 조사·확정(제4장 제1절 내지 제3절 및 제6장) 및
재생계획의 입안(제7장 제1절 및 제2절)등

절차개시결정후에는 재생계획입안의 전제로서 크게 두가지 절차가 행해진다. 그 하나는 재생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생채권의 신고·조사·확정절차이다(제4장 제1절 내지 제3절). 다른 하나는 재생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절차(제6장 제1절)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편파행위에 의하여 일실된 재산을 회복하는 부인권행사(동장 제2절), 위법행위를 행한 법인의 임원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급(동장 제3절), 재생에 불가결한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담보권의 소멸(동장 제4절)등과 같은 절차도 행해진다. 재생채무자등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재생계획안을 입안하고 채권신고기간의 만료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에 이를 제출한다(제163조).

(4) 재생계획안의 결의(제7장 제3절) 및 재생계획의 인가(제7장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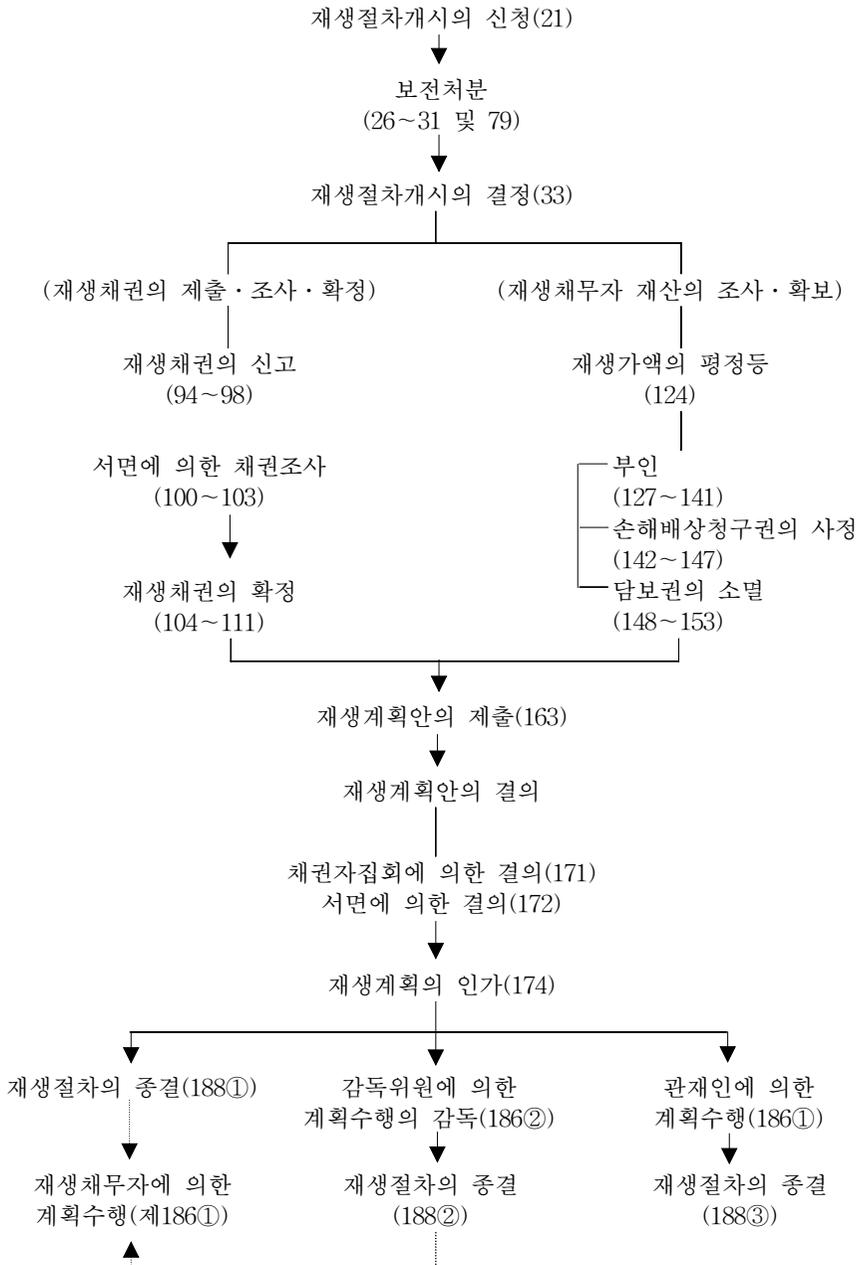
재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제171조) 또는 서면결의(제172조)에 회부한다. 재생계획안이 결의에서 재생채권자의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법원은 계획의 내용에 위법한 점이 없는가 등을 조사하고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한다(제174조). 재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생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하고(제178조),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재생채권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의 유예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79조).

(5) 재생계획의 수행 및 재생절차의 종결(제186조 및 제188조)

재생채무자등은 재생계획이 인가되면 신속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86조제1항). 재생절차는 재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종결된다. 그러나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3년이 경과되는 때까지(다만, 그 이전에 계획이 수행된 경우에는 그 때까지),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행되는 때까지(또는 수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계속된다.

<도> 재생절차의 흐름도



제 3 장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¹⁰⁾

I. 서 설

1. 민사재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한다면 그 경제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최종적으로는 파산절차에 의한 정산을 행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 또는 재산의 해체·청산에 따른 자산의 감가가 발생하게 되어 채무자 자신이나 그 채권자의 이익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손실이 클 수 있다.

민사재생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자의 다수의 동의를 얻고 또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생계획(제2조제3호 참조)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자와 그 채권자간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당해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사재생법은 재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파산절차나 화의절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인 및 개인이 그 대상이 된다.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10) 이하의 내용은 ‘深山卓也·花村良一·筒井健夫·管家忠行, “民事再生法の要點(1)·(2)·(3)·(4)”, NBL No. 680·681·682·683, 2000.1.1~2.15; 山本 弘, “民事再生手續の開始”, JURIST No. 1171, 2000.2.1; 田頭章一,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保全處分·中止命令等”, JURIST No. 1171, 2000.2.1; 山本克己, “民事再生手續開始の效力”, JURIST No. 1171, 2000.2.1; 三木浩一,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機關”, JURIST No. 1171, 2000.2.1; 林 伸太郎,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債權の取扱いと調査確定”, JURIST No. 1171, 2000.2.1; 上原敏夫, “民事再生手續における債務者の財産管理”, JURIST No. 1171, 2000.2.1; 松下淳一, “民事再生計劃”, JURIST No. 1171, 2000.2.1; 西澤宗英, “國際倒産”, JURIST No. 1171, 2000.2.1’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족하다(제21조제1항 참조).

2. 재생사건의 관할법원

(1) 재생사건은 ① 재생채무자가 영업자인 때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일본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② 영업자가 아니거나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5조제1항). 이 점은 일본 파산법 제105조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2)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보충적으로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소재지(채권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재생사건을 관할한다(제5조제2항). 이 점도 일본 파산법 제107조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3) 그 외에도 어떤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의 과반수를 가진 경우(당해 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일방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고 있는 법원에 타방의 재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3항). 모자회사관계에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양자에 대한 재생절차를 동일한 법원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은 재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송경제에도 바람직하다는 고려에서이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일방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도 양자의 경제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타방에 대한 재생사건의 신청을 동일한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4항).

3.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의 열람등

재생절차에 관하여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91조의 소송기록의 열람등의 규정이 준용된다(제19조 참조). 이를 전제로 하면서 공개법정에서 심리가

행하여지는 소송과의 성질상의 차이에 비추어 필요한 특칙을 둬으로써, 열람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1) 재생사건에 관한 문건등의 열람을 법원서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이다. 또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등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기록'이 아니라 '이 법률(이 법률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하여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 기타의 물건'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제17조제1항).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 외에 문서등의 복사, 그 정보·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의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등에 대해서는 그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제2항 및 제3항).

(2)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의 열람등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는 절차의 초기단계에서는 密行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①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자는 열람등의 청구에 관하여 일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7조제4항 단서). 이는 절차개시신청을 한 자는 신청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그 자신이 숙지하고 있어, 열람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재생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절차개시전의 잠정적 처분등(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담보권실행의 중지명령 또는 보전관리명령등) 또는 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한하여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제4항제1호).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이 공고·등기등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되고 절차개시신청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즉시항고에서 당해 처분을 다툼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공격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재생채무자 이외의 자가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 자신이라도 절차개시전의 잠정적 처분등 또는 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 후 또는 구두변론 또는 재생채무자를 호출하는 심문기일의 지정이 행하여진 후에 한하여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제4항제2호). 이러한 결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에게 공격방어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 중 일정한 것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열람등이 행하여진다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유지·재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해 문서를 제출한 자 본인과 재생채무자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람등의 제한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① 재생채무자, 관재인, 보전관리인 또는 감독위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허가를 얻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등(허가신청서) 및 ② 조사위원, 재생채무자등 또는 감독위원이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이다(제18조제1항 각 호).

그리고 열람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해관계인은 지장부분의 열람등을 청구할 수 없고(제18조제2항), 열람등을 제한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장부분의 열람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생법원에 대하여 열람제한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것 또는 이를 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이유로 하여 제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8조제3항). 또한 열람제한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 및 제한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8조제4항).

II. 재생절차의 개시

1. 재생절차의 개시

재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는 경우 신청권자에 의한 적절한 신청이 있고 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개시된다.

(1) 절차개시원인

제1의 개시원인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제21조제1항 후단). 이는 회사갱생법 제30조제1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더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일본 회의법에 의한 회의의 개시원인은 파산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일본 회의법 제12조), 민사재생절차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파산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의 개시원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이다(제21조제1항 후단). 이는 회사갱생법 제30조제1항 전단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 신청권자

재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제1의 개시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이지만, 제2의 개시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제1의 개시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관재인(제196조제1항 참조)도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제198조제1항).

(3) 신청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25조).

- ① 재생절차비용의 예납(제24조 참조)이 없는 경우
- ② 법원에 파산절차, 정리절차 또는 특별청산절차가 係屬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는 그러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보다 많은 배당 또는 변제가 기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 ③ 재생계획안의 작성, 가결 또는 재생계획 인가의 전망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는 재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재생의 수단인 ‘재생계획을 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이는 일본 회사갱생법 제38조제5호에 상당하는 규정이지만, ‘갱생의 전망이 없는 때’를 기각사유로 한다면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절차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생절차에서는 재생계획이 성립할 전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절차적 사항을 판단의 대상으로 한 다음 그 ‘전망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기각사유로 함으로써 절차개시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④ 부당한 목적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타 신청이 성실하게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는 진정으로 재생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의사나 진정으로 재생절차를 진행할 의사없이, 오로지 다른 목적(일시적으로 채권자로부터 징수를 피하거나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등)만을 위하여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등이다.

2. 절차개시전의 채무자재산의 보전조치

(1)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부터 재생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요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등에 의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된다면 효과적인 재생이 방해받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사재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보전조치를 두고 있다(제26조).

- ① 재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등 도산절차 및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제26조)
- ②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제27조 내지 제29조)
- ③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제30조)
- ④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제31조)

(2) 이 중 ③에 대해서는 화의법이나 회사갱생법에서 동일한 보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①은 회사갱생절차(회사갱생법 제37조)에서, ④는 정리절차(상법 제384조)에서 각각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②는 기존의 다른 절차에서는 없던 것으로 재생절차에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재생절차에서 새로이 도입된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하는 중지명령(제26조)과는 달리, ① 재생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점(목적재산의 포괄성), ② 재생채권을 가진 모든 재생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채권자의 포괄성), ③ 이에 의하여 금지되는 절차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어느 것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아니한다는 점(절차의 포괄성), ④ 이미 법원에 係屬

되어 있는 절차에 한하지 아니하고 장래적으로 신청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절차신청시기의 포괄성)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것은, 다수의 재산을 가진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신청후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절차가 係屬될 때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당해 신청에 요하는 절차가 상당히 번잡하게 되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등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요 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으로는 재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③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발한다(제27조제1항 본문).

또한 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은 ④ 사전에 또는 동시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감독명령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한 경우에 한한다(제27조제1항 단서). 이는 재생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재생채무자에 의한 재산처분등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재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1) 제도의 취지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생채권자에 의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발하는 단계에서는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결과로서 재생채권자측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은 일체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정한 재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係屬중인 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것과의 균형상(제26조제1항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 자체의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당해 재생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재생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은 ①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재생채권자에 의하고, ② 그 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발한다(제29조제1항).

여기에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재생채권자’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생채권자를 의미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이미 강제집행등을 신청한 자외에 해제의 결정을 받은 다음 새로이 강제집행등을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재생채권자도 포함된다.

또한 ‘부당한 손해’란 회사경쟁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긴급하게 강제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도산할 우려가 큰 경우와 같이, 중지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는 이익에 비하여 중지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큰 경우를 가리킨다.

5.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효력

(1)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재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재생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제38조제1항). 이 점은 화의법 제32조제1항 본문과 같다. 다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제41조) 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제54조제2항)를 지정함으로써,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절차의 대외적 효력에 관해서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외국에 있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평·성실의무

재생절차의 개시는 재생채무자가 가지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재생채무자에게는 재생절차개시후에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여 그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할 책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사재생법은 재생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재생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제2항).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는 특별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청산인의 의무를 정한 상법 제434조가 있다.

(3) 관리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특칙

(1)과 (2)에서 언급한 내용은 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조제3항).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생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가 전속되기 때문이다(제66조 참조).

6.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재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생채권)을 가진 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재생절차에 참가하여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85조제1항 참조). 그 결과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당연히 중지되고 새로이 이들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제39조제1항). 또한 재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가 係屬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40조제1항).

(2) 이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유권등에 기하여 재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재생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제52조).

또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로서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제35조),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3) 이해관계인이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가는 파산절차나 회사갱생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개시후에 재생채무자등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생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44조 제1항). 전형적인 예로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거나 별제권자가 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재생절차개시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재생절차개시후에 등기등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권리자가 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되고 있다(제45조제1항).

7. 재생채무자의 영업등의 양도에 관한 법원의 허가

재생절차개시후 재생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다음과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즉, 기업등이 도산한 경우 그 영업등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산한 기업등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반면에 필요성 또는 상당성을 결한 영업등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이익이 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등을 양도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어떠한 범위로 영업등을 양도할 것인가(전부양도 또는 일부양도) 그리고 양도의 대가 기타 양도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

인가는 재생채권자들의 이해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고 사업재생의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서는 영업등의 양도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개시후에 영업등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제42조제1항 후단),¹¹⁾ 그밖에도 양도의 대가 기타 양도계약의 내용의 상당성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8. 영업양도에 관한 대체허가

(1) 제도의 취지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존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산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그렇더라도 도산상태에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영업양도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산상태에 처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당해 회사경영에 관심을 잃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이 곤란하고, 또 채무초과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의 주주권은 실질적으로는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주주총회결의를 대체하는 허가를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43조). 동일한 대체허가를 정하고 있는 예로는 ‘금융기관의 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있다.

한편 제43조에 의한 대체허가는 영업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며, 영업양도를 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원의 허가(제42조 참조)는 별도로 얻어야 한다.

11) 구체적으로는 영업등을 양도하는 것이 재생절차를 두는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대체허가의 요건

법원이 대체허가를 발할 수 있는 것은 ① 재생절차개시후 ②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즉, 채무초과인 때에 ③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예컨대 영업을 양도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영업이 조만간 폐업될 상황등이 그러하다.

대체허가의 요건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허가 자체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로 영업양도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고려되기 때문이다.

Ⅲ. 재생절차의 기관

1. 개 요

재생절차의 기관으로는 감독위원, 조사위원,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4가지가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모두 임의적으로 선임되며, 민사재생법에서는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기관 즉, 필수기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화의법상 정리위원과 화의관재인이 필수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의 간이성과 유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각의 기관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재생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 동의권한을 행사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그 활동을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재생채무자의 사업활동등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사업경영 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등에 선임된다. 또한 감독위원과 조사위원은 절차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선임될 수 있고, 관리기관으로는 절차개시 후에는 관재인이 그리고 절차개시 전에는 보전관리인이

각각 선임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은 다른 기관과 함께 선임될 수도 있지만, 감독위원은 관재인이나 보전관리인과 같은 관리기관과 동시에 선임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미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고 사후적으로 관리기관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감독명령은 취소되고 감독위원은 해임된다. 이는 관리기관이 선임됨으로써 재생채무자 본인의 사업경영·재산처분권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감독위원이 감독할 대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2. 감독위원의 감독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면서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재생절차개시 후에는 법원에 의한 감독이 행하여지는데(제41조, 제42조 및 제125조), 그 업무수행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직접적인 감독 외에 재생채무자가 행하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상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고 당해 법률행위를 행함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지는 감독기관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후에는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이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하는 각종 보전처분(제26조 내지 제30조 참조)에 더하여 재생채무자가 일정한 법률행위를 행함에 대하여 동의권한을 가지는 감독기관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사재생법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이 감독기관인 감독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4조).

감독위원의 직무내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재생채무자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외에도 감독위원의 직무의 내용으로는 ① 법원이 개별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있어서 부인권한을 행사하는 것(제56조 참조), ② 재생절차개시 전에 公益債權化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하는 것

(제120조제2항 참조), ③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황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제125조제3항 참조), ④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재생채무자의 재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 것(제186조제2항)등이 있다.

3. 감독위원회에 의한 부인권행사

법원은 감독위원회에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제56조).

재생절차에 있어서도 재생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절차 및 회사갱생절차와 동일한 부인권제도를 두고 있다(제6장제2절). 그러나 파산절차 및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가지며 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문제되는 행위가 있는 때에 법원이 당해 특정한 행위에 관한 부인권한을 감독위원회에 부여하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한편 제외국의 입법례에서 채무자 본인에게 부인권행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론상으로는 재생채무자 자신에게 부인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생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개시 전에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그 적정·공평한 권한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재생법에서는 재생채무자에 의한 부인권행사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감독위원회가 부인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재생채무자를 위하여 금전의 수지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감독위원회가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복귀한 재산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수령 및 이에 따른 당해 재산의 관리등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4.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제62조).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절차개시 후 법원이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외에(제125조제2항 참조), 법원이 선임한 감독위원이나 관재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할 권한이 인정되고(제59조 및 제78조) 법원은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제125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한편 다수의 사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로써 상당한 정도의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① 감독위원이나 관재인등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재생채무자 본인에 의한 보고로는 불충분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사를 거친 보고가 아니라면 재생절차의 적절한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감독위원이나 관재인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자에 의한 조사 및 보고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특정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에 의한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조사 및 보고가 아니라면 재생절차의 적절한 수행이 곤란한 경우등이 있다는 점도 상정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재생법은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권한을 가지는 기관인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관재인에 의한 관리

(1) 관리명령의 발령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재생절차를 수행한다(제38조제1항). 그러나 절차의 개시 후에도 반드시 재생채무자가 업무수행권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의 재생에 의욕을 결하고 있는 재생채무자가 안이하게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재생채권자등 이

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관리명령)을 할 수 있다(제64조제1항).

한편 관리명령은 재생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위하여 관리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사업자인 개인의 경우 그 사업은 오로지 개인의 신용등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교체에 익숙하지 아니하며 사업상의 재산과 사생활상의 재산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점등이 고려된 결과이다. 어떠한 경우에 관리명령이 발하여지는가 즉,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명령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 경영자가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거나 경영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생채권자의 다수가 경영자의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 ② 이사등이 절차의 係屬중에 중대한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등을 들 수 있다.

(2) 발령 후 재생채무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

관리명령이 발해지면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전속되고(제66조) 재생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제38조제3항), 재생채무자가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재생절차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6조제1항 본문). ‘재생절차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란 행위의 상대방이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관재인으로부터 그 행위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예컨대 관재인은 재생채무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미이행인 경우 그 계약이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불이익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라는 것을 주장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행위의 당시 상대방이 관리명령이 발해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76조제1항 단서). 그리고 그 법률행위가 관리명령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선의였던 것으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악의인 것으로 각각 추정된다. 관리명령이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발해진 때에는 절차개시의 공고에 있어서 관리명령에 관한 사항도 병행하여 제기되는 관계로(제65조제2항), 이와 같은 상대방의 선의·악의의 추정은 그 법률행위와 절차개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제67조제항 및 제47조). 또한 회사갱생법 제56조제1항과 파산법 제53조제1항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선의·악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회사갱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는 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곧 바로 회사 또는 파산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이 박탈되고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관재인에게 전속되는데 대하여(회사갱생법 제53조 및 파산법 제7조), 재생절차에서는 절차개시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유지한다고 하는(제38조제1항) 절차구조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재생절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와의 거래에 응할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의 재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善意者保護’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6.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재생채무자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후에도 그 업무의 수행권 및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데,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제21조)을 발생시킨 재생채무자가 신청후에도 그 업무의 수행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생채무자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9조제1항 전단).¹²⁾

IV.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일반우선채권·개시후 채권

1.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생채권이 된다(제84조제1항). 그러나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이 되고(제122조제1항), 또 제49조제4항·제50조제2항·제120조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재생채권이 되는 것은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 중 일반우선채권 또는 공익채권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재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84조제2항제1호), 재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등(제84조제2항제2호) 및 재생절차참가비용(제84조제2항제3호)의 청구권은 재생절차개시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재생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등으로 특히 재생채권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제87조제2항).

그외에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아니지만 개별규정에 의하여 특히 재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재생절차개시후에 있어서의 환어음의 인수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제46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발행한 이익이 재생채무자의 재산중에 현존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이 취득하는 가액상환청구권(제132조제3항제3호)등이 있다.

12) 어떠한 경우에 보전관리명령이 발해지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명령의 경우와 동일한 고려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등

재생절차개시 후에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등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허용되는 것은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85조제1항).

이러한 '특별한 정함'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자가 가진 재생채권(동조제2항)이나 소액의 재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변제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변제허가제도는 재생채무자를 주요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更生법 제112조의2제1항과 같은 취지이다. '중소기업자'의 의의에 대해서는 회사更生법에서更生회사와 당해 중소기업자의 각각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민사재생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액의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허가제도는 이를 조기에 변제하여 재생채권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재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총채권자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경우라는 고려에 기한다는 점에서 회사更生법 제112조의2제4항과 같은 취지이다.

그밖에도 제85조제1항의 '특별한 정함'에 해당하여 재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제53조제2항), 재생채무자등이 별제권의 목적을 반환하는 경우(제41조제1항제9호) 및 상계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제92조 및 제93조)가 있다.

3. 재생채권의 신고

(1) 신고방법

재생채권자는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지만(제85조제1항), 다른 한편 그가 가진 재생채권으로 재생절차에 참

가할 수 있다(제86조 참조). 그리고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에 참가함에 있어서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재생채권신고기간(제34조 참조)내에 각 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금액 기타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제1항).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는 ① 재생채권자의 성명·주소, ② 제84조제2항에서 제기하는 청구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생채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뜻, ③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④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회사更生법 제125조, 파산법 제228조 참조)등이 있다.

더욱이 별제권자에 해당하는 재생채권자(제53조제1항 참조)는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되는 채권의 금액(부족액)도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제2항). 물론 부족액은 별제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재생채권 확정절차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변제되는 총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고 또 별제권자의 의결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제88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채권신고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제2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조 참조).

(2)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의 취급

재생절차에 있어서 재생채권인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또는 과료는 그 성질에 비추어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권리변경이나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제155조제3항 및 제178조 단서)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신고기간과는 무관하게 그 금액 및 원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97조).

4.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재생채권의 조사절차란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 및 재생채무자등이 인부서에 내용등을 기재한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내용·의결권의 금액등과 관련하여 ① 재생채권자들에게 인부할 기회, ② 재생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다툼의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또한 재생채권의 확정절차란 재생채권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생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재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생채권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재생채권의 내용과 관련한 사후적인 분쟁의 발생을 회피하고 재생채무자의 사업등의 재생을 확실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종래의 화의절차와는 달리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도입한 결과로서 재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재생채권의 조사절차에 있어서는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조사기일제도에 대신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인부서 및 재생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도(조사기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재생채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실제적 권리의 내용을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하는 전단계로서 간이한 결정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재생채권 사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認否書

재생채무자등은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認否를 기재한 認否書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1조제1항). 또한 인부서에는 신고의 추완등(제95조)이 있는 재생채권의 내용 및 의결권(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인부를 기재할 수 있다(동조제2항). 더욱이 알고 있는 재생채권을 가급

적 절차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신고되지 아니한 재생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생채권에 대하여 自認하는 내용등을 認否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3항). 그리고 재생채무자등은 일반조사기간(제34조 참조) 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認否書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이와 같이 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인부서는 재생채권의 조사·확정의 기초가 된다(제100조, 제104조, 제105조등 참조). 일본의 회사갱생 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제기하는 이의가 조사·확정의 기초가 되고(일본 회사갱생법 제143조, 제147조, 일본 파산법 제240조 및 제244조 참조), 관재인은 특히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하여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간이화·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채권조사절차의 서면화를 시도하는 외에, 재생채무자등이 자인하는 재생채권의 내용을 인부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정합성을 유지시킬 필요에서,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및 의결권에 대한 인부를 기재한 인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認否書에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취급이 문제되는데, ①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및 ② 신고의 추완등이 있는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의 어느 것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등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101조제5항).

한편 특별조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특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인부를 기재한 인부서를 작성하고, 특별조사기간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3조제3항).

13)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우리의 회사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같다.

6. 재생채권 査定의 재판과 이의의 소

(1) 재생채권 사정의 재판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재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그 재생채권이 조사대상이 된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재생채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생채무자등 및 이의를 제기한 신고재생채권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사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재생채권의 사정재판이란 적법한 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조제3항 및 제4항).

한편 재생절차에 있어서 의결권에 대해서는 ① 절차상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확정을 도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②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면 그 의결권의 금액은 자연히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등을 이유로 그 금액을 확정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의의 소

사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결정서의 송달(제105조제6항 참조)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재생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06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을 가진 재생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등의 전원을, 이의자등인 때에는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을 가진 재생채권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또한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合一定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두변론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라면 개시할 수 없고(동조제4항)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수 개의 이의의 소가 동시에 係屬되고 있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5항). 그리고 이의의 소의 판결에 있어서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6항).

7. 재생채권의 확정

재생채권은 재생채권의 조사에 있어서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고 조사기간 내에 신고재생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확정된다(제104조제1항). 법원서기관은 이와 같은 재생채권의 조사결과를 재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동조제2항), 확정된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재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동조제3항). 한편 이와 같은 규율은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서도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파산법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2조, 회사갱생법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도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 관한 해석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력은 재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재생채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대하여 발생하고 재생채권자 전원에게 미치는 외에, 재생채권이 확정된 후 그 권리를 취득하고 신고명의를 변경(제96조)을 거친 자에게도 미친다.

또한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행해진 판결은 재생채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지며(제111조제1항), 더욱이 재생채권의 사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판은 재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동조제2항).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의 특질에 비추어 특히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등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란 재생채권의 사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06조제1항) 및 재생채권의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절차를 수계한 소송(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을 말한다. 법원서기관은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등을 재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10조).

8. 채권자집회의 소집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집회의 종류로서 ① 재산상황의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제126조 참조)와 ②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제171조 참조)를 상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나 회사갱생절차에서와 같이 이러한 채권자집회의 개최를 필요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소집신청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권은 재생채무자등, 채권자위원회 및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의 채권총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다(제114조 전단). 이 중 채권자에 의한 소집신청의 요건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가 필요적으로 소집되는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신고가 있는 채권총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자로 되어 있지만(파산법 제176조 후단), 재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제1회 채권자집회에 상당하는 재산상황보고집회의 개최를 필요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소집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자의 의함에 따라 채권자집회의 소집 유무가 결정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제114조에 의하여 재산상황보고나 재생계획안의 결의 이외의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9. 채권자위원회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현대의 경제사회에 적합한 신속하고 기능적인 절차를 운용한다는 취지에서 실무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채권자집회의 개최를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절차에서는 도산처리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채권자의 의사가 재생절차의 진행등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도산법, 독일의 통합도산법등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새로이 채권자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채권자위원회제도는 재생채권자들에 의하여 재생절차 외에서 임의로 조직된 위원회가 제118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재생절차상의 일정한 권한등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권한등으로는 ① 법원이 채권자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제118조제2항), ② 채권자위원회가 법원, 재생채무자등 또는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동조제3항) 및 ③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제114조)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54조제2항에서는 ④ 채권자위원회가 재생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 기타 관여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생계획에서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채권자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42조제1항의 영업등의 양도를 허가함에 있어 채권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의 의견청취에 대신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단서).

10. 공익채권

제119조는 재생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청구권을 열거하여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更生법 제208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회사更生절차가 주식회사만을 절차의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재생절차는 법인 및 개인을 불문하고 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사업자인 개인도 절차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119조제2호에서는 회사更生법 제208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더하여 재생채무자의 생활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이 열거되어 있다. ‘생활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에는 재생채무자의 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

또한 제120조는 재생절차개시 전에 행해진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금의 차입, 원재료의 구입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청구권에 대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更生법 제119조의3의 개시전의 차입금등

의 취급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재생절차에서는 감독위원회에 법원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0조 제2항). 이는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자금의 차입, 원재료의 구입등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태양에 따라서는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번 법원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다른 한편으로 법원으로부터 특히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위원의 승인을 요하도록 한다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고려에 기한 것이다.

그밖에도 공익채권으로 되는 청구권으로는 제39조제3항·제49조제4항·제50조제2항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제49조제4항은 회사갱생법 제208조제7호에 상당하는 규정인데, 이는 오로지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을 정책적으로 공익채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19조 각 호에 열거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등으로 갱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절차개시 전 6월간의 회사사용인의 급료등을 공익채권으로 하고 있지만(회사갱생법 제119조 및 제119조의2), 재생절차에서는 실체법상 일반선택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청구권은 재생절차에 의한 제약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절차개시 후라도 수시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122조) 이러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11. 일반우선채권

(1) 일반우선채권으로 되는 청구권은 일반의 선택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다(제122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노동채권(민법 제306조제2호, 제308조, 상법 제295조, 유한회사법 제46조제2항 참조), 조세채권(국제징수법 제8조, 지방세법 제14조 참조) 또는 기업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채(기업담보법 제2조제1항 참조)와 같이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한 실체법상의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채권인 것은 일반우선채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채권이라도 재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은 일반우선채권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119조제2호 참조).

(2) 일반우선채권은 공익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되므로(제122조제2항),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공익채권과 일반우선채권 간에 그 취급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한편 일반우선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제121조제2항 참조), 이는 일반우선채권이 이미 실체법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생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재생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며, 공익채권이 일반우선채권의 취급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재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되지만(제16조제4항 및 제5항) 일반우선채권은 우선파산채권으로 되는데 그치기 때문에(파산법 제39조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채권과 일반우선채권의 취급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된다.

12. 개시후 채권

재생절차에서는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재생채권(제84조등), 공익채권(제119조등) 및 일반우선채권(제122조제1항)의 3개 기본적인 유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만 있는 경우에는 재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법인의 이사등의 조직법상의 행위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제119조제7호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절차개시 후의 어음거래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 지급인등이 악의이기 때문에 재생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제46조 참조)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는 열후적 갱생채권(회사갱생법 제121조제1항제4호 참조)이 되는 것으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상 열후적

인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전술한 3개 유형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개시후 채권’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두고 있다(제123조제1항). 이러한 개시후 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절차개시시로부터 재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까지의 기간동안 변제등을 받을 수 없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등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조제2항 및 제3항). 한편 재생계획의 성립에 이르기 전에 재생절차가 종료한 경우나 재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사후적으로 변제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재생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및 재생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시후 채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제약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생절차가 종료된 때,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계획이 취소된 때로부터 개시후 채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3조제2항 참조).

V.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1. 재산상황보고집회

재산상황보고집회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채권자집회를 말한다. 회사更生절차에서의 ‘제1회 관계인집회’(회사更生법 제187조)에 상당하는 것으로 절차개시후 비교적 조기에 열릴 것을 상정하고 있다(회사更生법 제46조제2호 참조).

그리고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 재생채무자들은 ① 재생절차개시에 이른 사정, ②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상, ③ 법인의 임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142조제1항) 및 사정재판(제143조)을 필요로 하는 사실의 유무, ④ 기타 재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26조제1항).

또한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 법원은 재생채무자, 관재인 또는 신고재생채권자로부터 관재인의 선임 및 재생채무자의 업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더욱이 재생채무자의 노동조합등은¹⁴⁾ 관재인의 선임 및 재생채무자의 업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제3항).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재건에 있어서는 종업원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재생채무자의 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히 노동조합등의 의견진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산상황보고집회를 포함하여 채권자집회가 필요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채무자등, 채권자위원회(제118조제2항) 또는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집하는데 그친다(제114조). 따라서 재산상황보고집회가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절차개시 후(관재인의 경우에는 그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제125조), 재생채권자는 법원서기관에 대하여 그 보고서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함으로써(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다.

2. 否 認

(1) 민사재생법에 의한 부인은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 의한 부인과 마찬가지로 절차개시전에 채무자가 재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나 다른 채권자등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등에 대하여 절차개시 후에 그 효력을 부정하고 감소된 재산을 회복하며 채권자간의 평등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도 ‘부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화의개시의 신청으로부터 화의개시의 결정까지의 기간동안 행해진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화의법 제31조 참조)나 화의절차개시 후에 관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14) 여기에서 노동조합등이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42조제3항 참조).

하고 행해진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화의법 제32조제1항 참조), 관재인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통상의 행위(동조제2항 참조)의 효력을 개개의 화의채권자가 부정하는 제도에 지나지 아니한다(화의법 제33조). 이러한 화의법상의 부인은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행사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간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민사재생법에서는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 의한 부인을 모방한 부인제도를 채용하여 재생채권자 간 평등의 확보를 도모한 것이다.

민사재생법상의 부인의 요건(제127조 내지 131조 및 134조)·효과(제132조 및 제133조) 및 행사방법(제134조 내지 제141조)은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과 거의 동일한데, 회사갱생법이 파산법에 있어서의 규율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재생법은 부인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새로운 입법인 회사갱생법의 모방에 치중하고 있다(제127조제1항제4호, 제131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 다만, 파산법의 규율 중 개인채무자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만을 절차의 대상으로 하는 회사갱생법상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파산법을 모방하고 있다(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제1항제2호). 또한 재생절차의 특징상, 특히 관리기관의 선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재생절차에 있어서만 채용되는 규율이 있고(제135조, 제138조 및 제141조), 또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서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는 조문의 표현을 개선한 부분이 나(제127조제1항제4호)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 있어서의 판례 또는 통설적 견해를 명문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제129조제1항).

(2) 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135조제1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또는 부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제56조제1항 참조) 또는 관재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관재인은 항변에 의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5조제3항). 관재인이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파산절차 및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는 부인권은 관재인이 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파산법 제76조 및 회사갱생법 제82조제1항), 절차개시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유지하는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권한을 부여한 감독위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된다(제56조 참조). 다만, 감독위원은 관재인과는 달리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제67조제1항 참조) 항변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변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는 관재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부인권 행사를 가진 감독위원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소와 재생채무자가 제기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경합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인의 소와 부인의 상대방 및 재생채무자 간의 소송에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일본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저촉되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부인권의 상대방 및 재생채무자 간의 소송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를 가진 감독위원은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8조제1항).

3.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1)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법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이사가 재생절차개시 전에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위법한 배당을 한 경우에는 일본상법 제254조의3 및 제266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계획에 의하여 감소하는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임원에 대한 책임 추급이 적절하게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데, 통상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책임을 추급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 간이·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법원이 결정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및 그 금액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 제1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제도에 의하여 임원의 책임추급이 간이·신속하게 행해지면,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이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14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도는 전술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사정재판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한 책임추급이 실현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임원의 책임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일본 民事保全法에 기하지 아니하는 특수보전 처분으로서(민사보전법 제14조 참조), 이를 발하는 법원도 보전법원(동법 제12조 참조)이 아니라 재생사건이 係屬되는 법원이다.

(3) 한편 제142조 및 제143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으로 회사경생법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와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제9호가 있는데, 이들 규정을 민사재생법에 있어서의 사정제도와 비교해보면 사정의 대상으로 되는 권리의 내용 및 사정의 신청권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민사재생절차에 있어서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인 재생채무자의 이사, 감사, 청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임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 회사경생법은 ① 발기인 또는 이사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등 및 ② 발기인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정의 대상에 더하고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발기인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정의 대상에 더하고 있다. 그러나 ‘발기인 또는 이사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등’은 물적 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 특수한 청구권이고 ‘발기인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특유한 책임으로서 어느 것도 법인의 임원 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은 아니라는 점, 또 회사경생 및 회사정리의 실무에 있어서 이들 청구권에 대하여 사정재판이 행해진 예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등을 이유로 민사재생법에서는 이들 권리를 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민사재생법에 있어서는 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즉, 재생채무자가 업무수행권 및 재산관리·처분권을 가진 경우에는 재생채권자에게 보전처분 및 사정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제142조제3항 및 제143조제2항), 회사갱생법이나 상법상의 회사정리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업무수행권등을 가지지만 재생채무자가 스스로 임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전처분이나 사정을 신청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생절차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재생채권자에게도 보전처분 및 사정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담보권소멸제도의 취지

재생절차에서는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및 상사유치권을 가진 자에게는 별채권이 부여되어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절차 외에서의 담보권의 실행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행하도록 한다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이 매각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재생채무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고 담보권의 목적을 환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제41조제1항제9호 참조).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담보목적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든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담보권을 갖지 아니하는 재생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목적을 환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목적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만족을 줌으로써 재생절차개시 당시 당해 재산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의 확보를 도모하는 담보권소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5. 담보권소멸의 절차

(1) 담보권소멸허가의 신청서등의 송달

담보권소멸의 허가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서와 함께 신청서를 담보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48조제3항). 이 중 신청서의 송달은 재생채무자등의 담보권자에 대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상당하는 것으로, 복수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청구권 행사의 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고 또 각 담보권자에게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의 여부를 일정기간내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생채무자등에게 절차 외에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이 허가결정서를 송달하는 기회에 신청서도 동시에 송달하도록 한 것이다.

(2) 담보권소멸허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소멸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48조제4항).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의 가액(신청액)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와는 별도로 제149조에서 규정하는 가액결정의 청구라고 하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있어서 담보권자는 주로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다투게 된다.

(3) 가액결정의 청구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우선 재생채무자등에게 신청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담보권자는 가액결정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가액결정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생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49조제1항 및 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담보권소멸허가를 결정한 법원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생법원은 가액결정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평가를 명하고(제150조제1항), 평가인의 평가에 기하여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4) 가격결정청구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생채무자등 또는 담보권자는 가격결정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50조제5항).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의 성격상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액을 하회하는 금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신청권자에는 재생채무자등 및 가액결정청구를 한 담보권자 외에 가액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5)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와 담보권의 소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은 법정기간내에 가액결정의 청구가 행해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의 청구가 행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액으로 각각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재생채무자등은 그 정해진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52조제1항). 담보권자가 가진 담보권은 이러한 금전의 납부가 있을 때에 소멸한다(동조제2항)

6. 가액결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재산평가

(1) 담보권소멸제도는 재생채무자가 담보권목적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인에 의한 평가에 기하여 법원이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50조제2항). 그리고 재생절차에 있어서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이 부여되고 있고 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제53조) 담보권소멸제도는 이러한

별제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재산 평가의 기준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가액 즉, 처분가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강제절차에서 실현되는 가치를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하고, 최선순위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참조) 그 용익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최선순위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용익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 용익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제2항 참조) 이 경우 용익권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여 가액을 계산한다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담보권소멸제도는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는 하는 사태를 쉽게 상정할 수는 없지만, 가령 그와 같은 사태가 있게 된다면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담보권자가 얻어야 할 이익이 박탈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일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담보권소멸허가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의 방해를 의도하는 자가 목적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함으로써 매수의 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또 경쟁매매가 저해되는 결과 사실상 매각가격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는 목적재산의 가액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평가인에 의한 평가에 기하여 객관적인 재산의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150조제2항) 사실상의 점유자의 유무에 의하여 재산의 평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VI. 재생계획

1. 개 요

(1) 필요적 기재사항

재생계획에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 내지 제160조).

또한 재생계획의 내용의 당부나 이행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보를 재생채권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공익채권(제119조) 및 일반우선채권(제122조)의 변제에 관한 조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154조제1항).

(2) 그밖의 법정기재사항

재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위원회(제118조 참조)가 그 감독등의 활동을 할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 그 경우 감독등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그 비용을 재생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 및 정도가 계획 전체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위원회가 변제기간 내에 그 이행의 감독 기타 관여를 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그 부담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154조제2항).

또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생계획안에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제154조제3항 전단 및 제161조). 또 그와 같이 하여 재생계획안에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도 재생계획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4조제3항 후단 및 제161조제2항).

2. 재생계획의 조항의 내용

(1) 재생채권자간의 평등·형평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생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제155조제1항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동항 단서). 그 첫번째 예외는 불이익을 받는 재생채권자가 그 취급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예외는 소액재생채권을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절차개시후의 이자등 이른바 열후적 채권(제84조제2항 참조)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등 재생계획에서 권리의 변경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채무의 기한

재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한이 유예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채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제155조제2항). 회사갱생법 제213조는 채무의 기한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데, 현대의 경제사회의 실상에 비추어 중소기업등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정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10년을 초과하는 채무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예컨대 재생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재생채무자의 사업이 과도에 오를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한다면 재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대폭 높아지며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제99조 참조)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함을 할 수 없다(제155조제3항). 이는 벌금

등이 다른 재생채권과 동열로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 감축의 대상이 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이다.

3. 미확정채권등의 취급

(1) 미확정채권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제105조제1항 참조)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제159조). 적절한 조치란 장래 미확정채권의 존부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더라도 다른 재생채권자와 평등하게 즉,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취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컨대 ‘일반적 기준(제156조)에 따라 확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 이후 다른 재생채권과 동일한 변제율로 지급하는 외에, 확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그 시기까지 이미 다른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개시되고 있었지만 미확정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지체이자를 붙여 변제한다’는 것과 같은 정함이 있는 경우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별채권부 채권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그 채권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채권자로서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제160조제1항). 별채권자는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제88조 본문 및 제182조 본문),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재생계획에 명시하거나 변경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생계획에 적절한 조치를 정해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근저당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채권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본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단순히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보증채무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잔여채무액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한도액을 하회하게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담보채권에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본이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액이 확정된 후 ① 피담보채권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에게 감소액에 대응하는 계획에 의한 변제액을 반환하고, ②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증가액에 대응하는 계획에 의한 변제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채권자가 가진 담보권이 원본이 확정되어 있는 근저당인 경우에는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담보채권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제156조)에 따라 가지급에 관한 정함을 둘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제160조제2항 전단),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산에 관한 조치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0조제2항 후단).

다만, 이러한 가지급등은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가지급등을 할 필요성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가지급인 이상은 근저당권자와 재생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지급에 관한 정함이 있는 재생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65조제2항).

4. 재생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재생절차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재생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생채무자의 주주 기타 다른 출자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권리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재생채무자의 조직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생계획에 의한 변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개시 후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자본을 감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의 감소나 신주발행의 전제로서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절차 외에서 상법소정의 절차¹⁵⁾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탄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본감소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본상법 제375조제1항 및 제343조)의 성립이 곤란하다. 다른 한편으로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회사更生법 제129조제3항 참조).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상법의 특례로서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감소에 관한 조항 및 재생채무자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1조 및 제166조제1항·제2항). 이 경우에는 확정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정관은 재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변경된다(제183조제1항 및 제3항).

15) 일본 상법은 자본의 감소에 관해서는 제375조이하에서, 그리고 정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42조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5. 재생계획안의 작성자 및 제출자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들은 채권신고기간의 만료 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63조 제1항). 재생계획안의 작성·제출시기에 관하여 화의절차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화의조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화의법 제13조제1항), 화의절차의 활용에 중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갱생법을 모범으로 하여 완화한 것이다(회사갱생법 제189조제1항 참조).

더욱이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나 신고재생채권자도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163조제2항). 이러한 자들에게 재생계획안의 작성·제출권을 인정하여 각각의 재생계획안의 비교검토에 의하여 한층 재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갱생절차를 모범으로 하여 작성·제출권자를 확대한 것이다(회사갱생법 제190조제1항 참조).

6. 재생계획안의 결의

(1) 서면결의제도의 도입

현행 화의절차나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는 계획안의 결의는 채권자집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자의 수가 현저하게 많아서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체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재생계획안 결의제도(제171조)와 함께 서면에 의한 회답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신할 수 있는 서면결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제172조).

서면결의에 붙인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① 재생계획안을 기재한 서면 및 ② 재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간 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

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제172조제2항). ‘공고’는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제115조제3항 참조)에 대응하는 것이고, ‘재생계획안의 송달’은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계획안 또는 그 요지의 송달(제171조제2항 참조)에 대응하는 것인데, 채권자집회에 의한 결의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생계획안의 요지만을 송달하고 재생계획안은 집회에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에 의한 결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회가 없으므로 재생계획안의 요지의 송달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2) 서면결의에 붙이는 결정등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할 것인가 서면결의에 의할 것인가는 1차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붙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제172조제1항), 그 외의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제171조제1항).

이러한 서면결의에 붙인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데, 서면결의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체에서 심리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재생계획안을 변경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제171조제3항),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172조제5항은 서면결의의 회답기간 내에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신청권자로부터 채권자집회의 소집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필요적으로 서면결의에 붙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7. 재생계획안의 가결요건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재생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출석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생채권자의 과반수이고 의결권총액의 2분의 1이상의 의

결권을 가지는 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71조제4항).

현행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가결요건은 출석한 의결권자의 과반수이고 의결권총액의 4분의 3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화의법 제49조제1항 및 파산법 제306조 참조), 재생절차에서는 이 중 의결권총액에 관한 요건을 4분의 3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는 ① 재생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변제계획이 정해진 경우에는 '재생계획의 가결이 재생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제17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법원에 의한 불인가결정이 행해지기 때문에 재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재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재생채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는 점, ② 독일의 통합도산법이나 미국의 연방도산법등 제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제1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가결요건이 반드시 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서면결의의 경우 제1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생계획안의 가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제172조제3항)은 서면에 의한 회답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따른 형식적인 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요건은 제171조제4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8. 재생계획의 인가·불인가 결정

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제17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한다(제174조제1항·제2항). 가결된 계획안의 인가·불인가의 요건에 관하여 화의법 제51조는 불인가요건(소극요건)을, 회사갱생법 제233조제1항은 인가요건(적극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개시 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등을 유지하고 가급적 재생채권자 및 재생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의법 제52조와 마찬가지로 불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4조제1항 및 제2

항에서 인가 또는 불인가하는 경우를 양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인가 사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할 여지가 없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174조제2항 중 제1호는 화의법 제52조제1호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제1호 단서에서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화의법 제51조제1호에 대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를 명문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제2호는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때에는 불인가한다는 것으로 회사更生법 제233조제1항제2호의 후반부분에 상당하는 규정인데, 동호와는 달리 재생채권자가 재생계획안이 가망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판단을 존중하도록 소극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제3호는 화의법 제51조제3호와 동일한 것이고 회사更生법 제23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소극요건으로 바꾼 것이다. 제4호는 재생계획의 결의가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불인가하는 것으로, 화의법 제51조제4호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¹⁶⁾

9.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변경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재생채권자 및 재생채무자가 자인하는 재생채권(제101조제3항 참조)을 가진 재생채권자의 권리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변경된다(제179조제1항). 그리고 신고재생채권자등은 그가 가진 재생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제104조제1항 및 제111조 참조)에 한하여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즉,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변경된 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79조제2항). 이들 규정은 회사更生법 제242조제1항 및 제243조와 동일한 취지이다.

또한 신고되지 아니한 재생채권(재생채무자가 자인하는 재생채권 제외)이라도 제181조제1항 각 호에서 제기하는 것은 면책되지 아니하고 재생계획에서 정하는 권리변경의 일반적 기준(제156조 참조)에 따라 권리가 변

16)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이란 특정한 재생채권자가 아니라 재생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생계획에 의한 변제율이 배당률을 하회하는 경우등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경된다. 이는 재생절차가 절차개시 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생채무자 자신이 재산의 관리·처분권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생채무자와 재생채권자 간의 이해조정을 도모한 것으로 회사갱생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계획의 정함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이외의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채무자는 재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178조 본문). 이는 회사갱생법 제241조 본문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한편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는 제181조제1항 각 호에서 제기하는 비면책채권 이외에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등(제97조 참조)이 있다(제178조 단서 및 제181조제3항).

이에 대하여 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은 기본적으로 재생절차에 의한 제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생계획의 정함(제154조제1항 참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면책될 여지가 없다.

VII.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1. 재생계획의 이행확보

(1) 종래의 화의절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의조건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회사갱생절차에서와 같이 관재인을 필요적 기관으로 하고 갱생계획의 수행이 완전하게 종료되거나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르기까지 관재인이 갱생계획을 수행하도록 한다면(회사갱생법 제272조제1항 참조), 이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절차의 종결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88조제1항),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3년간 재생절차를 종결시키지 아니하고 그 기관동안 감독위원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제186조제2항 및 제188조제2항).¹⁷⁾ 또한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갱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재생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재생계획이 수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때에 재생절차를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다(제188조제3항).

(2) 또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한 재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180조제2항),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동조제3항). 이는 회사갱생법 제245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회사갱생절차에서는 갱생채권자표등의 기재에 기한 강제집행은 ‘갱생절차종결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동조제2항), 관재인이 필요적 기관이 아닌 재생절차에서는 ‘재생절차종결 후’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재생절차의 係屬중이라도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재생채무자등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89조제1항제2호) 그 신청의 요건을 화의취소의 경우(화의법 제64조제1항 및 파산법 제332조제1항)보다 대폭 완화하고 있다(제189조제3항).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재생계획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재생계획의 취소

(1)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채무자와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의 관점에서 재생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계획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제189조). 그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에

17)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절차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종래 화의절차등의 실무상 계획수행단계에 들어가서 2,3년간 계획에 기한 변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도 순조롭게 그 추이가 이어졌던 예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재생계획 이행의 완료까지 감독위원에 의한 감독을 계속한다면 감독위원에 선임된 자의 부담이나 재생채무자의 비용부담등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다.

대해서는 재생계획변경의 경우와는 달리 재생절차종료 전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제189조제1항 참조) 재생절차의 종료후에도 재생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2) 재생계획의 취소사유는 제189조제1항 각 호에서 이를 계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취소사유는 재생계획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이다. 이러한 취소사유는 재생계획 불인가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제174조제2항 제3호) 이를 이유로 하는 재생계획신청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제한등을 두고 있다(제189조제2항).

제2호의 취소사유는 재생채무자들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이다. 재생절차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감면 기타 변경함으로써 재생채무자가 변경후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 변경후의 채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생채무자가 감면등의 이익을 향유할 전제를 상실한 것이라고 고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생계획의 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해서 곧 바로 재생계획 전체를 취소시켜 버린다면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98조제3항에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재생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전부의 권리 중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재생채권자일 것 및 ② 당해 재생채권자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이행기한에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①에 있어서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중 미이행부분에서 점하는 비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후의 재생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②의 요건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합산하여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권자는 공동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는 재생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는 행위를 그 허가 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바로 재생계획 이행의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채무자의 재생에 대한 불성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또 재생채무자의 부적당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생계획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 것이다.

(3) 이상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호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재산상태의 악화에 따라 재생계획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지만 재생계획의 변경(제187조)에 의하여 대처가 가능한 경우라든가 제3호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등이 그러하다.

VIII. 재생절차의 폐지

재생절차의 폐지란 재생절차개시 후에 재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제191조는 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재생계획안의 작성·제출 또는 결의라고 하는 절차적인 관점에서 재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재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경우의 폐지

제192조제1항도 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채권신고기간의 경과 후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생절차개시

의 신청사유(제21조제1항) 즉,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재생채무자, 관재인 또는 신고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갱생법 제274조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동항이 회사갱생절차의 개시사유의 부존재 또는 해소에 기초를 둔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폐지

제193조제1항은 재생계획인가의 전후를 불문한 절차폐지사유인데, 재생채권자가 절차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태양이 다양하기하고 또 곧 바로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감독명령 또는 관리명령을 발한 다음 절차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등이 있기 때문에 재량적인 절차폐지사유로 하고 있다.

4.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제194조는 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폐지사유인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재생채무자등 또는 감독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의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생계획의 인가후에도 재생절차가 계속되는 것은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생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거나 재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지만(제186조제1항·제2항 및 제188조제2항·제3항 참조),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후에는 이들 기관을 유지하여 재생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IX.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채무자가 국제적인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일본과 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 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외국에서 도산처리절차가¹⁸⁾ 개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일본에 있는 사업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이 곧 바로 발생하지는 아니한다(파산법 제3조제2항 및 회사갱생법 제4조제2항등). 또한 이와 같은 외국도산처리절차와 병행하여 일본에서 파산절차나 회사갱생절차등 도산처리절차가 행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도산처리절차에 관한 각국의 법제가 각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조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국제도산의 관할에 관하여 철저한 普遍主義(1채무자 1도산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재생법에서는 국제도산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일본의 재생절차와 외국도산처리절차가 동시에 係屬되어 있는 이른바 병행도산의 상태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 절차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재생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¹⁹⁾

- ① 재생채무자등과 외국관재인 간에 상호 필요한 협력 및 정보를 제공할 것(제196조)
- ②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무자

18) 외국에서 개시된 절차로서 파산절차나 갱생절차와 같이 경제적으로 파탄한 채무자에 대하여 청산 또는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9) 한편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산법제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도산처리절차 그 자체를 일본에서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재생절차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파산절차, 회사갱생절차등 도산절차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재생절차의 입안과정에서는 그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금후의 검토과제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에게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제197조)

- ③ 외국관재인에게 일본의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일정한 권한(절차개시의 신청권,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권리등)을 인정할 것(제198조)
- ④ 재생채무자등과 외국관재인이 각각의 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재생채권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대방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될 것(제179조)

X.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

1. 제도의 취지

재생절차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제도(제4장 제3절)를 도입하여, 재생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액을 확정된 다음 적절한 재생계획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한 재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제180조제3항) 그 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 상호간에 채권의 내용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든가 이의등이 있는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가 마련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에 사적 정리가 시도되어 상당수의 채권자가 재건의 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② 중·소규모의 도산절차로서 채권자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생절차 외에서 실질적인 재건을 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등에는 채권조사절차등을 생략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이나 경제생활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민사재생법에서는 채권액의 5분의 3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① 사전에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고 ②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이재생제도). 재생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채권조사등의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의 여부가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집행력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생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재생채권자가 ①과 ②의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거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에 추가하여 재생계획안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의재생절차).

2.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의 차이

간이재생의 결정이나 동의재생의 결정은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등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 결과 성질상 적용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나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규정등 일부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205조 및 제209조).

또한 간이재생의 결정이나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모든 재생채권자의 권리(벌금등은 제외한다)가 재생계획의 권리변경조항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변경을 받게 된다(제204조제1항 및 제208조제2항). 그 결과 종래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파산법 제326조 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가의 여부 또는 신고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재생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변경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간이재생이나 동의재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다른 점은 없고, ①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의 선임(제54조 및 제64조 등), ② 채권자위원회의 절차관여의 승인(제118조), ③ 부인(제127조이하)·법인의 임원등의 책임의 추급(제142조이하) 및 담보권의 소멸(제148조이하)등 각 제도의 이용, ④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제154조제3항, 제161조, 제166조 및 제183조), ⑤ 재생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등의 재생계획취소제도(제189조)의 적용, ⑥ 벌칙의 적용(제210조이하 참조)등이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해질 수 있다. 한편 재산상황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제126조)에 관해서는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소집할 수 있지만, 동의재생의 결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행해진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제208조제1항 참조) 재생계획의 성립전에 집회를 소집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 4 장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민사재생사건의 분석²⁰⁾

I.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1. 민사재생사건의 건수

2000년 7월 8일 현재 동경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민사재생사건의 신청건수는 56건이라고 한다.²¹⁾ 이러한 추세라면 1년간의 신청건수가 2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과거 1년간 동경지법 파산부에 접수된 화의신청건수가 4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5~6배에 달하는 수치인데,²²⁾ 동경지법 이외에서는 화의신청건수의 2배 전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동경에서의 신청건수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동경지법은 동경의 사무소의 수나 변호사의 수를 고려한다면, 화의사건의 수치는 너무 적은 것이고 민사재생사건의 신청건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재생채무자의 실태

(1) 법인과 개인

전술한 56건의 재생사건 중 법인이 재생채무자인 사건이 54건이고 개인은 2건이다. 법인을 종류별로 보면 주식회사가 50건, 유한회사가 3건, 의료법인이 1건으로 되어 있다.

우선 개인의 신청이 2건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건 중 1건은 병원경영

20) 이하의 내용은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状況”, NBL No. 697, 2000.9.15;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事件の概況”, NBL No. 696, 2000.9.1; 四宮章夫, “民事再生實務の運用開始にあたって”, NBL No. 685, 2000.3.15; 田原睦夫, “民事再生法の運用と實務”, NBL No. 684, 2000.3.1’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21) 2000년 8월 31일 현재 동경지법 파산부에 있어서의 민사재생사건의 신청건수는 100건이다.

22)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화의의 신청건수는 8건이었다고 한다,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状況”, NBL No. 697, 2000.9.15, 6면.

자인데, 병원경영자의 신청은 화의법 당시에도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 건은 회사의 신청과 함께 회사의 대표자도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화의법 당시에는 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화의법은 항간에서 사기법등으로 불리울 정도로 평판이 나빴는데, 그러한 평판 나쁜 구체절차로 대표자까지 채무를 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신청대리인이 누구든 간에 화의절차로 회사와 함께 회사대표자의 채무정리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대표자가 금융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회사가 채무정리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추급될 것을 생각한다면, 민사재생절차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있었다.²³⁾ 이번에 회사와 함께 회사대표자의 재생신청이 행해진 것은 민사재생절차의 이미지가 높아진 결과임과 동시에 신청대리인의 풍부한 착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예납금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²⁴⁾

(2) 법인의 종류

법인 54건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건설업, 부동산업, 음식업, 금융업, 호텔업, 신문발행업, 의료업 기타 서비스업등에 걸쳐 워낙 다양하여 어떤 업종이 많고 어떤 업종이 적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즉,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민사재생절차는 어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3) 재생채무자의 규모

민사재생절차를 신청한 회사의 규모를 보면 약 20% 가량이 대기업인

23) 寺澤達也・荒井紀充・石坂弘紀, 民事再生法を活かす鍵,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0. 8, 111면.

24) 2000년 8월에도 회사대표자에 대한 민사재생사건이 또 한 건 신청되었다고 한다,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状況”, 전계논문, 7면.

데, 이는 화의법 당시와 비교하여 대기업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화의법 당시에도 최종년도인 지난 해부터 대기업인 회사의 신청이 있을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민사재생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경향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대기업 중 부채액이 100억엔 이상인 회사가 8개이고, 채권자수가 1,000명이상인 회사가 7개이다. 이 중 1부 상장회사와 2부 상장회사도 각각 1개씩 있다.

절차의 진행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적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의 절차진행이 원활한 것을 볼 수 있다.²⁵⁾ 다만, 대규모회사의 경우 영향을 받는 관계자가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따라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민사재생절차는 구경영자가 회사에 남은 채로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을 일환으로 구경영자가 퇴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규모회사의 신청건수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약 80%는 중소기업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민사재생법이 중소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부채액이 30억엔 정도이고 채권자수가 100인 전후인 기업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회사가 전체의 60% 정도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이 민사재생절차의 주된 이용자라고 말할 수 있다.

3. 절차의 진행상황

(1) 이미 종료된 사건

전술한 56건의 신청사건 중 이미 4건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조기에 종료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리에 절차를 끝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25) 대규모회사가 법적 채권절차에서 성공률이 높은 것은 미국이나 프랑스등에 있어서도 실증되고 있는 바이다, 高木新二郎, 倒産法の改正と運用, 商事法務研究會, 2000.5, 116면 참조.

아니다. 2건에 대해서는 파산선고가 내려졌는데, 2건 중 1건은 자금관계로 인하여 조기종료된 경우로 재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즉시항고도 기각되어 직권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또 다른 건은 기각결정후에 직권파산선고를 하려고 했지만, 진행중인 공사가 있어서 기각결정을 하고 관보에 공고한 다음 그 확정을 기다려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²⁶⁾ 현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고 또 기각결정으로부터 확정까지 1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사재생법의 입안 당시부터 법제심의회에서도 염려를 표명했던 문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신청대리인 및 감독위원과 협의한 결과 신청의 취하를 허가하고 취하와 동시에 파산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여, 기각결정의 확정까지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파산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료된 사건도 2건 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의 신청이 없었고 감독위원만 선임되었으며, 경매절차중지명령의 가부에 관한 심리가 행해졌다. 심리의 결과 경매절차중지명령이 발해지지 아니하고 신청이 취하되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전처분이 발해지지 아니하였고 일반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하를 허가하였다. 이 2건은 신청직후 감독위원을 선임한 사건으로, 보전처분이 발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하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2) 개시결정의 시기

이미 종료된 4건을 제외하고 2000년 7월 8일 현재 일본 동경지법 파산부에 係屬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이 중 40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7월 8일을 기점으로 3주전인 6월 16일까지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모두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점은 화의사건의 운용과 크게 다른 점이다.

26) 기각결정에는 재생채무자 외에 재생채권자(재생절차개시의 신청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도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생채무자로부터 즉시항고 포기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고 관보에 공고하여 그 날로부터 2주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개시결정은 감독위원이 주요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발해진다. 자금관계등의 사유로 기각된 사건은 약 5%이고 나머지 95% 가량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순에 따라 20일 정도후에 개시결정을 하고 있다. 개시결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범시행시점인 2000년 4월 1일에는, 신청 3주 후에 협의기일을 두고 문제가 없다면 그 1주 후에 개시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 개시결정까지 1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시행경험과 절차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절차기간을 단축하여 왔는데, 7월 10일 이후부터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없는 한 신청후 15일정도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 동경지법은 주요채권자의 의견청취등을 이유로 이 정도가 신속처리의 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표> 민사재생절차의 표준일정표(2000.7.31)

절 차	신청일로부터의 일수
신청·예납금납부 보전처분 결정·감독위원 선임	0일 0 ~ 2일
제1회 협의기일 개시결정 채권신고기한 재산평정서·보고서 제출기한 계획안(초안) 제출기한	2주간 2주간 + 1일 6주간 7주간 2월
제2회 협의기일 인부서 제출기한 일반조사기간 계획안 제출기한	2월 9주간 10주간 ~ 11주간 3월
제3회 협의기일 감독위원의견서 제출기한 채권자집회 소집결정	3월 3월 + 1주간 3월 1주간 + 2일
채권자집회·인부결정	5월

출 처 : 일본 동경지방법원 민사20부

(3) 재생계획안의 제출 및 채권자집회의 개최

현재 일본 동경지법 파산부에 係屬중인 52건의 係屬중인 사건 중 이미 5건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되어 있다.²⁷⁾ 5건 중 4건은 화의로부터 이행된 것이고 처음부터 재생사건으로 계획안이 제출된 것이 1건이다. 후자는 4월 중순을 넘어 신청된 사건으로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8월 2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신청대리인이 특별히 절차의 진행을 서두른 결과라고 한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본다면 표준일정에서는 신청으로부터 채권자집회까지 5월로 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4월~5월로 채권자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동경지법은 통상의 경우라면 6월정도에 채권자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I.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1. 예납금의 납부

예납금은 화의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용하고 있고 예납금기준표를 파산부의 청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신청시에는 예납금의 6할~7할을 납부하고 잔금의 납부는 개시결정까지 유예하는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신청대리인측에서 예납금의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동경지법은 예납금으로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을 보조하는 공인회계사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모자회사등 관련회사 또는 회사와 회사대표자등으로 수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예납금을 감액하는 것과 이를 정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종래 화의사건에 있어서 대규모회사의 사건인 경우에는

27) 2000년 8월 31일까지 재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집회 소집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0건이다, 國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状況”, 전계논문, 9면.

다액의 금액의 납부가 요구되었는데, 민사재생사건에 있어서는 예납금이 반드시 사건의 규모와 사무량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례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이를 기준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2. 보전처분의 결정과 감독위원의 선임

동경지법은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당일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전처분을 발함과 동시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감독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예외없이 감독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종래의 화의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발하고 수주후에 정리위원을 선임하였지만, 민사재생법 시행후에는 대부분이 변호사인 400인이 넘는 감독위원후보자명부를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 신청 당일에 감독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조사

감독위원의 선임과 함께 채권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독위원은 위촉을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인회계사를 보조자로 선임하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장래정보 즉, 재생계획의 이행가능성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과거정보 즉, ① 경영이 곤란해진 원인, ② 장부의 정확성 및 ③ 재무관계의 위법행위 유무의 3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 이는 이행가능성의 조사가 장래의 예측하는 것으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며, 인가결정후 3년간은 감독위원이 감독을 하게 되므로 이행가능성에 관한 조사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감독위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400인이상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할 공인회계사의 확보가 원활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한다.

4. 개시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

재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행해진 사건이 2건 있었다. 한 건은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1월 남짓 지나서 고등법원의 항고과기결정이 있었다. 다른 한 건은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2월 정도가 되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출된 경우 감독위원회는 항고심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도산사건에서는 기록만으로는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를 감독위원회로부터 보조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5. 관재인의 선임 유무

지금까지 동경지법에서 관재인이 선임된 예는 없었다. 또 지금까지의 56건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에도 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재생법은 담보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생절차에서는 회사갱생절차에서와 같이 관재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다. 둘째, 재생절차에서는 주주나 구임원에 대한 관재인의 지배권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셋째, 재생절차에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 채로 조기에 개시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책임을 축소하여 관재인을 선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채권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경영자를 교체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6.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발한 사례가 1건 있었다. 또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이들 사례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재생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이고 개별집행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시결정의

가망이 있는 사안에서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다. 가압류의 집행취소도 원칙적으로 무보증으로 하고 있다.

7.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

민사재생법은 담보권을 별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에 대하여 지배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까닭에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법문상의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경지법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해석·운용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에 대하여 지배력을 미치는 절차인 회사갱생절차와는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의 신청은 이미 4건이 있었다.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경매절차를 3월간 중지하는 명령이 발해졌다. 이는 채권자집회가 있기까지는 담보권의 실행을 보류해달라는 바램에서의 중지명령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재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중지시킬 방법은 없다고 한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신청을 각하하고 2건은 신청이 취하되었다.

8. 담보권소멸청구

담보권소멸청구를 이유로 하는 경매중지명령의 신청이 3건 있었는데, 모두 담보권소멸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취하의 이유는 한 건은 부지가 대표자 개인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 한 건은 경매절차에서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나왔으며, 나머지 한 건은 일괄변제를 위한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경지법은 담보권소멸청구가 이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통상은 임의의 협의를 통하여 성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담보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물건가격 상당의 금전이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9. 부인권의 행사

동경지법에서는 지금까지 감독위원회에 부인권 행사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사건이 종료되어 버린다면 감독위원의 지위가 없어지고 부인권 행사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절차의 구조상 그 정도의 적극적인 운용은 기대되지 않으며, 금후에도 주로 교섭재료 정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0. 영업양도의 허가

전술한 56건 중 8건에 대하여 영업양도가 검토과제로 되어 있다. 이는 대단히 높은 비율로 종래의 화의절차와 비교하여 영업양도가 검토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 중 허가된 것이 이미 5건에 달한다. 영업양도교섭에 실패하여 재생사건취하 후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한 건 있다. 나머지 2건은 영업양도를 교섭하는 중에 있다. 민사재생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전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許否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전면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던 종래와 비교하여 그 운용이 쉬워졌다. 법원의 전면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가격결정에 법원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전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한다. 의견조회 단계에서의 영업양도의 가격설정은 채무자대리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채무자대리인의 가격설정에 관한 검토와 교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원으로서의 전채권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15일 내지 20일 정도의 준비기간의 필요하다. 이는 전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법원에 모이도록 안내하는 기간이다. 채권자수가 200인 정도의 경우라면 법원의 채권자집회장에 모이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요 채권자 200인 정도를 법원에 모이게 하고 이를 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문에 광고를 내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1. 채권조사

동경지법은 채권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상담 또는 분쟁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금후 각별한 검토를 요하는 과제로 책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특별조사나 사정의 신청이 상당한 건수에 이르는데,²⁸⁾ 그 외에도 통지누락, 신고지체, 자인채권이라는 이유에서의 누락등에 의한 다양한 분쟁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재생사건의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외채권이 많은 회사의 사건에 대하여 재생절차의 신청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재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에 문제가 발행하는 사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2. 이행의 감독

이행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인가를 결정한 전건에 대하여 3년간 그 이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경지법이 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중간하게 이행의 감독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전건에 대하여 3년간 이행을 감독하는 방침이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8) 동경지법은 2000년 8월 31일까지 신고제출기한이 도래한 43건 중 8건에 대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은 7건이고 그 중 한 건에 대하여 채권확정소송이 제기되었다,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状況”, 상계논문, 14면.

제5장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12월과 1999년 12월의 2회에 걸쳐 도산절차의 신속·원활화와 도산법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하여 도산법 즉,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규모에 차이가 있고 형태가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 그 특성에 맞게 이용할 만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그리고 ‘도산기업이 과연 사적정리가 아닌 도산절차를 이용할 만한 동기 내지는 실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 남아 있다.

먼저 우리의 도산법제는 기업갱생절차로서 화의절차와 정리절차를 두고 있는데, 화의절차는 중·소규모 법인과 개인기업을, 정리절차는 주식회사를 각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중·소규모 및 법인·개인으로 분화되어 있는 우리의 기업들은 도산처리의 방법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도산기업 중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산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현실성 문제에 있어서, 도산기업이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의 또는 정리절차가 사적 정리가 아닌 이들 법적 절차를 이용할 만한 동기 내지는 실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화의의 경우에는 기업주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갱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이 유인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신청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무리한 화의조건을 수립될 개연성이 크며 또 화의조건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갱생확률의 저조하다는 등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정리절차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주에 대체되는 법정관리인이 절차를 주도하고 담보권도 절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일응 강력한 갱생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권의 박탈은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울러 정리

절차는 적용대상을 주식회사로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인 소요기간과 다액의 비용 그리고 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주식회사가 선뜻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못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산절차의 이용도와 직결되는 것인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특히 갱생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가진 기업의 절차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양자 구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독일의 통합도산법이나 프랑스의 도산법처럼 도산절차를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미국의 연방도산법이나 일본의 최근 도산법제와 같이 도산절차의 한 축은 파산절차로 하고 다른 한 축은 종래의 화의절차와 정리절차의 장점만을 추출하여 만든 갱생절차로 하는 방안과 같이, 현행 도산법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산기업의 자발적 절차신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경영권유지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미국의 1978년 연방도산법이나 일본의 1999년 민사재생법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견제·감시하는 감독위원이나 기존 경영자를 대신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직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아직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시행경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향후 우리의 도산법제 개선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갱생절차에 있어서의 담보권부채권 및 우선권 있는 채권의 취급(제84조, 제88조, 제119조, 제121조 및 제148조이하)을 비롯하여, 보전처분의 충실화 및 남용방지(제26조,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2조 및 제79조), 재생계획 이행확보조치의 강화(제180조제3항, 제188조제2항·제3항 및 제189조), 정보개시제도의 충실화(제17조), 채권조사·확정 및 계획안 결의등과 관련한 절차구조의 간소화·합리화(제100조 내지 제103조, 제105조 및 제172조), 계획안 작성시기의 탄력화(제163조), 영업양도 및 자본감소에 관한 대체허가제도(제42조, 제43조, 제154조제3항 및 제166조), 간이재생제도 및 동의재생제도의 도입(제200조이하 및 제206

조이하), 국제도산사건에의 대응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제89조 및 제 196조 내지 제199조)등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간 도산법제 개선작업과 관련하여 논의를 계속해온 쟁점사항으로 향후 논의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적지 않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 5 장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

<참고문헌>

1. 단행본

- 寺澤達也・荒井紀充・石坂弘紀, 民事再生法を活かす鍵,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0. 8.
- 藤原 總一郎, 民事再生節次とM&A, 商事法務研究会, 2000. 7.
- 小林信明, 民事再生法の理論と實務, 中央經濟社, 2000. 6.
- 高木新二郎, 倒産法の改正と運用, 商事法務研究会, 2000. 5
- 深山卓也・花村良一・筒井健夫・管家忠行・坂本三郎, 問答式 民事再生法, 商事法務研究会, 2000. 3.
- 才口千晴・田原睦夫・林 道晴, 民事再生手續の運用モデル, 法曹會, 2000. 2.

2. 논문

-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法の施行狀況”, NBL No. 697, 2000. 9. 15.
- 園尾隆司, “東京地裁における民事再生事件の概況”, NBL No. 696, 2000. 9. 1.
- 四宮章夫, “民事再生實務の運用開始にあたって”, NBL No. 685, 2000. 3. 15.
- 林 道晴, “民事再生規則の概要と運用のイメージ(上)・(下)”, NBL No. 684~685, 2000.3.1~3.15.
- 田原睦夫, “民事再生法の運用と實務”, NBL No. 684, 2000.3.1.
- 伊藤 眞・才口千晴・瀬戸英雄・田原睦夫・山本克己, “[逐條解説] 民事再生法 (1)・(2)”, 金融財政事情研究会 No.1571・1572, 2000.2.2

<참고문헌>

5~3.5.

深山卓也・花村良一・筒井健夫・管家忠行, “民事再生法の要點(1)・(2)・(3)・(4)”, NBL No. 680・681・682・683, 2000.1.1~2.15.

深山卓也, “民事再生法制定の経緯と法の概要”,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伊藤 眞, “民事再生法の概要”, NBL No. 682, 2000.2.1.

山本 弘, “民事再生手続の開始”,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田頭章一, “民事再生手続における保全処分・中止命令等”,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山本克己, “民事再生手続開始の效力”,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三木浩一, “民事再生手続における機關”,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林 伸太郎, “民事再生手続における債權の取扱いと調査確定”,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上原敏夫, “民事再生手続における債務者の財産管理”,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松下淳一, “民事再生計劃”,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西澤宗英, “國際倒産”, ジュリスト No. 1171, 2000.2.1.

일본 민사재생법

(1999년 법률 제225호)

목 차

- 제 1 장 총칙(제1조 ~ 제20조)
- 제 2 장 재생절차의 개시
 - 제 1 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제21조 ~ 제32조)
 - 제 2 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제33조 ~ 제53조)
- 제 3 장 재생절차의 기관
 - 제 1 절 감사위원(제54조 ~ 제61조)
 - 제 2 절 조사위원(제62조 · 제63조)
 - 제 3 절 관재인(제64조 ~ 제78조)
 - 제 4 절 보전관리인(제79조 ~ 제83조)
- 제 4 장 재생채권
 - 제 1 절 재생채권자의 권리(제84조 ~ 제93조)
 - 제 2 절 재생채권의 신고(제94조 ~ 제98조)
 - 제 3 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제99조 ~ 제113조)
 - 제 4 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제114조 ~ 제118조)
- 제 5 장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및 개시후채권(제119조 ~ 제123조)
- 제 6 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 제 1 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제124조 ~ 제126조)
 - 제 2 절 부인권(제127조 ~ 제141조)
 - 제 3 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궁(제142조 ~ 제147조)
 - 제 4 절 담보권의 소멸(제148조 ~ 제153조)
- 제 7 장 재생계획
 - 제 1 절 재생계획의 조항(제154조 ~ 제162조)

일본 민사재생법

제 2 절 재생계획안의 제출(제163조 ~ 제168조)

제 3 절 재생계획안의 결의(제169조 ~ 제173조)

제 4 절 재생계획의 인가 등(제174조 ~ 제185조)

제 8 장 재생계획인가 후 절차(제186조 ~ 제190조)

제 9 장 재생절차의 폐지(제191조 ~ 제195조)

제10장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제196조 ~ 제199조)

제11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제1절 간이재생(제200조 ~ 제205조)

제2절 동의재생(제206조 ~ 제209조)

제12장 벌칙(제210조 ~ 제215조)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고 또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생계획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자와 그 채권자간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당해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의 재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생채무자”라 함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로서, 그 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고 재생절차개시가 결정되거나 재생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생채무자 등”이라 함은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재인을 말한다.
3. “재생계획”이라 함은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조항 기타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생절차”라 함은 다음 장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외국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재생절차에 관하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 4 조(외국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의 효력)

- ① 외국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 및 일본국내에서 개시된 재생절차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일본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재생사건의 관할)

- ① 재생사건은 재생채무자가 영업자인 때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일본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자가 아니거나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재생사건은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소재지(채권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일본 민사재생법

③ 제1항 및 제2s149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출자구좌를 가지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 또는 당해 유한회사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당해 법인의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당해 주식회사 또는 당해 유한회사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당해 법인의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때에는 재생사건은 먼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제 6 조(전속관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관할은 전속으로 한다.

제 7 조(재생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생사건을 다음에 계기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1. 재생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재생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법원
4.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법원
5.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의 지방법원에 재생사건이 係屬되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법원

제 8 조(임의적 구두변론등)

- ① 재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재생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 9 조(불복신청)

재생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제10조(공고등)

- 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공고는 게재가 있던 날의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통상의 서류취급우편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고는 일체의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촉탁등)

- ①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재생절차개시의 등기를 재생채무자의 각 영업소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제54조제1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당해 처분의 등기를 재생채무자의 각 영업소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감독위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위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64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1. 재생절차개시 결정의 취소,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인가·불인가 결정의 확정
 2. 재생계획취소 결정의 확정(재생절차종료전인 경우에 한한다.)
 3. 재생절차종결 결정에 의한 재생절차의 종결
- ⑥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하는 경우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⑦ 등기관은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절차개시 결정의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은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파산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등기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당해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생채무자재산(재생채무자가 가진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을 때
 2. 등기 있는 권리에 관하여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보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 또는 당해 보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 ③ 법원서기관은 재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재생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상법 제387조제2항(동법 제4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된 경우 재생절차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촉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은 재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서기관이 재생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파산의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부인의 등기)

-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법원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재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부인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 재생절차의 종료전에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재생절차의 종결, 재생계획의 취소 또는 재생절차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등록으로의 준용)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등록이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재생절차종료등에 수반되는 파산선고등)

① 파산선고전의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재생절차폐지, 재생계획불인가 또는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재생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법 제72조제2호 내지 제5호,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및 제104조제2호·제4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제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재판 또는 행위는 그 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

1. 재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 또는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재생절차의 종료전에 행해진 신청에 한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재생절차개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정리절차 또는 특별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개시의 명령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재생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재생채무자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행위

2.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으로 제1호에서 제기한 것 이외의 것이 확정된 경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

③ 파산선고후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효력을 상실한 후 제193조 또는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72조제2호 내지 제5호,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및 제104조제2호·제4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제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신청이 있는 때에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93조 또는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재생절차의 종료전에 행해진 신청에 기한 것에 한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의 신청

2.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으로 제1호에서 제기하는 것 이외의 것이 확정된 경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공익채권(재생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제50조제2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을 포함한다. 제5항에 있어서도 같다.)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⑤ 파산선고후의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제191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전의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인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속행된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17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서기관에 대하여 이 법률(이 법률에서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하여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문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법원서기관에게 문서등의 복사, 그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의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문서등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그 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자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제54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

2. 재생채무자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구두변론 또는 재생채무자를 호출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재판

제18조(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 ① 다음에 계기하는 문서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열람 또는 등사, 그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를 행함으로써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유지재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지장부분'이라 한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문서등을 제출한 재생채무자등(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에 보전관리인.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도 같다.), 감독위원 또는 조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지장부분의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신청을 한 자 및 재생채무자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제41조제1항(제8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제56조제4항 또는 제81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등
2.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사결과의 보고 또는 제1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관련된 문서등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해관계인(동항의 신청을 행한 자 및 재생채무자 등을 제외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은 지장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장부분의 열람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생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는 것 또는 이를 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이유로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 및 전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9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생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최고법원규칙)

이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 재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재생절차개시

제1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제21조(재생절차개시의 신청)

- ①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도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파산등의 신청과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그 법인에 대하여 파산 또는 특별정산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소명)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존재도 소명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예납)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재생절차의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② 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재생절차개시의 조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재생절차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법원에 파산절차, 정리절차 또는 특별청산절차가 係屬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
3. 재생계획안의 작성, 가결 또는 재생계획 인가의 가망이 없는 것이 명백한 때
4. 부당한 목적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기타 신청이 성실하게 행해지지 아니한 때

제26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① 법원은 재생절차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에 계기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 기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신청인인 재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재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정리절차 또는 특별청산절차
2.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재생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상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에 의한 경매(제27조, 제29조 및 제39조에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의 절차에서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
3.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절차
4.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사건으로 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절차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재생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케 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재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또는 동시에 재생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한 경우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이 발해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중지된다.
- ③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케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⑤ 포괄적금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⑦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진 때에는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당해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익일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28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등)

- ①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 제2항에서 같다.) 및 신청인에게, 그리고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 및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은 재생채무자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이 행해진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명령 및 동조 제5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 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한 경우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재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재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생채권자는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채무

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당해 재생채권자가 행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속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제27조제7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7조제7항 중 ‘당해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결정이 있던 날’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 및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무자가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재생채권자는 재생절차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보전처분에 반하여 행해진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재생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당해 보전처분이 행해진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 한한다.

제31조(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고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공익채권 또는 일반우선채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의 제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전에 한하여 당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또는 제54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행해진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제33조(재생절차개시의 결정)

- ① 법원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그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과 재생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개시의 공고등)

-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재생절차개시 결정의 주문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 및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에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의 감독위원, 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 대해서도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생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기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6조(항고)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개시결정의 취소)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그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8조(재생채무자의 지위)

- ① 재생채무자는 재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재산(일본국내에 소재하는 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제66조 및 제81조제1항에 있어서 같다.)를 관리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성실하게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 재생절차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 ①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파산,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이를 할 수 없고, 파산절차 및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진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는 중지되고 정리절차 및 특별청산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법원은 재생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지된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절차로 인하여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및 그 절차에 관한 재생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에 관한 재생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40조(소송절차의 중단등)

- ①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중 재생채권에 관한 것은 중단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제107조제1항, 제109조제2항(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2조제5항(제2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는 때까지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재생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 사건 중 재생채권에 관한 것이며, 재생절차개시당시 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재생채무자등의 행위제한)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가 다음에 계기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입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또는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환취권의 승인
9. 별채권의 목적의 반환
10.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2조(영업등의 양도)

①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등이 재생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

① 재생절차개시 후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완제할 수

일본 민사재생법

없는 때에는 법원은 재생채무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재생채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 제2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대체허가'라고 한다.)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재생채무자들에게,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대체허가의 결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채무자들에 대한 송달이 행해진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한 송달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주주가 재생채무자에게 통지한 주소로 하여 통상의 서류취급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통상 도달해야 할 때에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⑥ 대체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4조(개시후의 권리취득)

①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권으로 인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재인 또는 재생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재생채권자는 재생절차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재생절차개시일에 취득한 권리는 재생절차개시후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개시후의 등기 및 등록)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재생절차개시 후에 행해진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재생절차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재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이나 기업담보권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①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재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표 및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재생절차개시의 공고'라고 한다.)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생절차개시의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48조(공유관계)

- ① 재생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재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재생채무자들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재생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49조(쌍무계약)

- ① 쌍무계약에 대하여 재생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재생절차개시당시 서로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생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재생채무자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뜻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채무자등이 그 기간 내에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 ⑤ 파산법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중 '파산채권자'는 '재생채권자'로, 동조제2항 중 '파산자'는 '재생채무자'로, '파산재단'은 '재생채무자재산'으로, '재단채권자'는 '공익채권자'로 한다.

제50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①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의 급부와 관련된 재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것을 이유로 재생절차개시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재생절차개시 전에 행한 급부와 관련된 청구권(일정기간별로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계속적 급부에 대하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기간내의 급부에 관계된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쌍무계약에 대한 파산법의 준용)

파산법 제61조,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63조제1항 중 ‘파산선고’, 동항 및 제66조제1항 중 ‘파산의 선고’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동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중 ‘파산채권자’는 ‘재생채권자’로, 동법 제66조제2항 중 ‘파산자’는 ‘재생채무자’로, ‘파산재단’은 ‘재생채무자재산’으로, ‘파산채권’은 ‘재생채권’으로 한다.

제52조(환취권)

- ① 재생절차의 개시는 재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재생채무자로부터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파산법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제1항 전단 중 ‘파산선고’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파산자’는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로, 동법 제89조제1항 본문 중 ‘파산의 선고’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동항 단서 및 동법 제9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파산관재인’은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전관리인)’로, 동법 제89조 제2항 중 ‘제59조’는 ‘민사재생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별제권)

- ①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또는 상법규정에 의한 유치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② 별제권은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재생절차의 기관

제 1 절 감독위원

제54조(감독명령)

-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감독위원회에 의한 감독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처분(이하 ‘감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당해 감독명령에서 1인 또는 수인의 감독위원을 선임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재생채무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감독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감독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⑥ 감독명령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5조(감독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 ① 법원이 감독명령을 발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감독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감독명령,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동조제6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감독명령에 관하여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부인에 관한 권한의 부여)

- ①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재생채무자를 위하여 금전의 수지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한 감독위원회 소의 제기, 화해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감독위원회가 제4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7조(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등)

- ① 감독위원회는 법원이 감독한다.
-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감독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독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58조(수인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감독위원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각각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하거나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59조(감독위원회에 의한 조사)

감독위원회는 개인인 재생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인 재생채무자의 이사, 감사, 청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재생채무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60조(감독위원의 주의의무)

- ① 감독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② 감독위원이 제1항의 주의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감독위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1조(감독위원의 보수 등)

- ① 감독위원은 비용의 선급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감독위원은 그 선임 후 재생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재생채무자의 주식 기타 재생채무자에 대한 출자에 의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③ 감독위원이 제2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비용 및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 2 절 조사위원

제62조(조사명령)

-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처분(이하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명령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및 법원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조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④ 조사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3조(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3항, 제57조, 제58조 본문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이를 조사위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3 절 관재인

제64조(관리명령)

- ① 법원은 재생채무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재생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처분(이하 ‘관리명령’이라 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명령에서 1인 또는 수인의 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관리명령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⑤ 관리명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5조(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 ① 법원은 관리명령을 발한 때에는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관리명령을 발한 취지 및 관재인의 성명 또는 명칭
 - 2.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소지자 및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제5항에서 ‘재산소지자등’이라 한다.)는 재생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
- ②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재생절차개시의 공고에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명령, 제3항의 결정 또는 제64조제5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3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리명령이 발해진 후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알고 있는 재산소지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통상의 서류취급우편으로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이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⑧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관재인의 권한)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 및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에게 전속한다.

제67조(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의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취급)

- ①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재인을 원고 또는 피고로 한다.
- ②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재생채무자가 당사자인 것은 이를 중단한다. 제45조제1항의 소와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재생채권자가 당사자인 것에 대해서도 같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 중 재생채권과 관련이 없는 것은 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受繼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 중 재생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107조제1항 또는 제109조제2항(제113조 제2항 후단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된 것은 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⑤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재생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68조

- ① 제6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에 대하여 동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재생채무자는 당해 소송절차를 당연히 수계한다.
- ②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수계가 있는 후에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재생채무자가 당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은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관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동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는 후에 관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6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재생절차가 종료하거나 관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재생채무자'는 '제143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재생채권자'로 한다.

제69조(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사건의 취급)

제67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8조의 규정은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건으로 관리명령이 발해진 당시 행정청에 係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수인의 관재인의 직무집행)

- ① 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각각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하거나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② 관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71조(관재인대리)

- ① 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관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관재인대리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3조(우편물의 관리)

- ① 법원은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관청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생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리명령이 취소된 때에도 같다.

제74조

- ① 관재인은 재생채무자에 온 우편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를 열어 볼 수 있다.
- ② 재생채무자는 관재인에 대하여 관재인이 수취한 전항의 우편물의 열람 또는 당해 우편물에서 재생채무자의 재산과 관련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관재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 ①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재생채무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6조(관리명령후의 재생채무자의 행위등)

- ① 재생채무자가 관리명령이 발해진 후에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재생절차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관리명령이 발해진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명령이 발해진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생채무자에게 행한 변제는 재생절차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일본 민사재생법

- ③ 관리명령이 발해진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재생채무자에게 행한 변제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을 한도로 해서만 재생절차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제4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재생절차개시의 공고'라 한다.)'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 한다.

제77조(임무종료의 경우 보고의무등)

- ① 관재인이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재인이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재인 또는 재생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재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재생절차종료 전에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재인은 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을 변제하고 이러한 채권 중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78조(감독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3항, 제57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관재인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은 관재인대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보전관리인

제79조(보전관리명령)

- ①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생채무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기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처분(이하 '보전관리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전관리명령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④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⑤ 보전관리명령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0조(보전관리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 ①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발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도 같다.
- ② 보전관리명령,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동조제5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에 관하여 공고 및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보전관리인의 권한)

- ① 보전관리명령이 발해진 때에는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 및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보전관리인에 전속한다. 다만, 보전관리인이 재생채무자의 일상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제41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보전관리인대리)

- ① 보전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수인의 보전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전관리인대리의 선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감독위원회에 관한 규정등의 보전관리인등에 대한 준용)

- ① 제54조제3항, 제57조, 제59조 내지 제61조,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제61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대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대하여, 제6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6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재생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사건으로 보전관리명령이 발해진 당시 행정청에 係屬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 한다.

제 4 장 재생채권

제 1 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제84조(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 ①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일본 민사재생법

이를 재생채권으로 한다.

② 다음에 제기하는 청구권도 재생채권으로 한다.

1. 재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청구권
2. 재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청구권
3. 재생절차참가의 비용청구권

제85조(재생채권의 변제금지)

①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절차개시 후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생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재생채무자를 주요한 거래처로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그가 가지는 재생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갱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와 제2항의 중소기업자의 거래상황,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재생채무자등이 재생채권자로부터 제2항의 신청을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그 뜻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정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액의 재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함으로써 재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6조(재생채권자의 절차참가)

① 재생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재생채권으로 재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파산법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 본문 중 ‘파산의 선고’와 동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중 ‘파산선고’는 ‘재생절차의 개시’로, 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 단서 중 ‘파산채권자’는 ‘재생채권자’로, 동법 제24조 중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각 재생절차에 있어서’로, 동법 제26조제3항 중 ‘파산자’는 ‘재생채무자’로 한다.

제87조(재생채권자의 의결권)

① 재생채권자는 다음에 제기하는 채권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1. 재생절차개시 후 기한이 도래하는 확정기한부채권으로 무이자인 경우

재생절차개시시로부터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의 기간의 연수(그 기간에서 1년을

- 충족하지 못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삭하는 것으로 한다.)에 따른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채권액에서 공제한 금액
2. 금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
각 정기금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합계액(그 금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원본액)
 3. 다음에 제기하는 채권
재생절차개시시에 있어서의 평가액
가. 재생절차개시 후 기한이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채권으로 무이자인 것
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인 정기금채권
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라. 금전채권으로 그 금액이 불확정한 것 또는 그 금액을 외국의 통화로서 정한 것
마. 조건부채권
바.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행할 것이 있는 장래의 청구권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제기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
채권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채권자는 제84조제2항에서 제기하는 청구권 및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8조(별채권자의 절차참가)

별채권자는 그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부분에 대해서만 재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담보되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당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89조(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

- ① 재생채권자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후에 재생채무자의 재산으로 외국에 있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재생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라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의 전부를 가지고 재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생채권자는 다른 재생채권자가 자기가 받은 변제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재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의 재생채권자는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채권의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0조(대리위원)

- ① 재생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일본 민사재생법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대리위원은 이를 선임한 재생채권자를 위하여 재생절차에 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대리위원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행하면 족하다.
- ④ 법원은 대리위원의 권한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보상금등)

- ① 재생채권자, 대리위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재생에 공헌한 때에는 법원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에서 적당한 범위내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2조(상계권)

- ①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개시당시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 및 채무의 쌍방이 재생채권의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에 적합한 상태가 된 때에는 재생채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 ② 파산법 제10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중 '파산채권자'는 '재생채권자'로, '파산선고'는 '재생절차의 개시'로 한다.

제93조(상계의 금지)

다음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재생채권자가 지급의 정지, 파산,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하 이 조문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알고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하는 때, 재생채권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안 시기보다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는 때 또는 파산선고,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 중 어느 시기보다도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재생절차개시후에 타인의 재생채권을 취득한 때.
4.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재생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하는 때, 재생채권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안 시기보다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는 때 또는 파산선고,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 중 어느 시기보다도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재생채권의 신고

제94조(신고)

- ① 재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내에 각 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금액 기타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별채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별채권의 목적 및 별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예상되는 채권의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신고의 추완등)

- ① 재생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 이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의 추완기간은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 ③ 채권신고기간경과후 발생한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고는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재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재생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귀책사유 없이 다른 재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신고명의를 변경)

신고한 재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신고명의를 변경을 받을 수 있다.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認否書에 기재된 재생채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97조(벌금, 과료등의 신고)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또는 과료(공익채권 또는 일반 우선채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그 금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시효의 중단)

재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재생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99조(재생채권자표의 작성)

- ① 법원서기관은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 및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무자등이 認否書에 기재한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생채권자표에는 각 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금액,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금액 기타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재생채권의 조사)

법원에 의한 재생채권의 조사는 제9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한 認否書 및 재생채권자와 재생채무자(관계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서면에 의한 이의에 기한다.

제101조(認否書의 작성 및 제출)

- ① 재생채무자등은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認否를 기재한 認否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재생채권에 대해서도 그 내용 및 의결권(당해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 후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認否를 제1항의 認否書에 기재할 수 있다.
- ③ 재생채무자등은 신고되지 아니한 재생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권에 대하여 自認하는 내용 기타 최고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의 認否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재생채무자등은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의 조사를 위한 기간(이하 '일반조사기간'이라 한다.)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認否書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認否書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당해 認否書에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 중 어느 것에 대한 認否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 ① 신고한 재생채권자(이하 '신고재생채권자'라 한다.)는 일반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의 내용, 의결권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認否書에 기재된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재생채무자(관계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일반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일반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재생채무자, 관재인 및 신고재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통상의 서류취급우편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이 통상 도달하는 때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3조(특별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

- ①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조사를 위한 기간(이하 '특별조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채무자등이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認否書에 당해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특별조사기간에 관한 비용은 당해 재생채권을 가지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재생채무자등은 특별조사기간과 관련된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인부를 기재한 認否書를 작성하고, 특별조사기간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1조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신고재생채권자는 제3항의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하여,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동항의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조사기간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별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결정서의 송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재생채권의 조사의 결과)

- ① 재생채권의 조사에 있어서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고 조사기간 내에 신고재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은 때에는 그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의 금액(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認否書에 기재된 재생채권에 있어서는 그 내용)은 확정된다.
- ② 법원서기관은 재생채권의 조사결과를 재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재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재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05조(재생채권의 査定의 재판)

- ① 재생채권의 조사에 있어서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재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권(이하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이라 한다.)을 가지는 재생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당해 재생채무자등 및 당해 이의를 제기한 신고재생채권자(이하 이 조문 내지 제107조 및 제109조에서 '의의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査定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7조 및 제109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査定의 신청은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한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일본 민사재생법

- ③ 제1항 본문의 査定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신청을 부적법으로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査定의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
- ④ 査定의 재판에 있어서는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 ⑤ 법원은 査定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자들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본문의 査定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査定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① 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 ③ 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을 가진 재생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들의 전원을, 이의자등인 때에는 당해 재생채권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소의 구두변론은 동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 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제1항의 소가 수 개 동시에 係屬되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107조(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①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는 경우 재생채권자가 그 내용의 확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들의 전원을 당해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0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주장의 제한)

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과 관련된 사정절차 또는 제106조제1항의 소의 제기 또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권자는 이의 등이 있는 재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 재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9조(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등에 대한 이의의 주장)

- ①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 중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자등은 재생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는 경우 이의자등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등은 당해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③ 제10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제106조제4항, 제5항 및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제4항 중 ‘동항의 기간’은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과 관련된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자등이 재생채권자인 때에는 제102조제1항 또는 제103조제4항의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의자등이 재생채무자인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에 있어서 그 재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법원서기관은 재생채무자등 또는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제106조제1항의 소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당해 재판의 내용)를 재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등의 효력)

- ①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행해진 판결은 재생채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제106조제1항의 소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당해 재판은 재생채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2조(소송비용의 상환)

재생채무자의 재산이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재생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3조(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에 대한 불복신청)

- ①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에 대해서는 제100조 내지 11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추징금 또는 과료의 원인이 심사청구, 소송(형사소송을 제외한다.)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인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들은 당해 추징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당해 불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동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는 재생채무자들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금 또는 과료의 신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등에 대하여,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또는 수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제114조(채권자집회의 소집)

법원은 재생채무자등 또는 제10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위원회의 신청 또는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의 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자집회기일의 호출등)

- ①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재생채무자, 관재인, 신고재생채권자 및 재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호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기일의 호출은 출석장의 송달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고재생채권자는 호출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노동조합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있어서 그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언급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채권자집회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117조(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 ① 재생채무자등 또는 신고재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신고재생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신고재생채권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또는 동항 본문의 이의가 없는 의결권을 가지는 신고재생채권자는 그 확정금액 또는 신고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의 이의가 있는 의결권을 가지는 신고재생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및 얼마의 금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한다.
- ④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재생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8조(채권자위원회)

- ① 법원은 재생채권자들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계기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위원의 수가 3인이상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내일 것.
 - 2. 재생채권자의 과반수가 당해 위원회가 재생절차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 3. 당해 위원회가 재생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한다고 인정될 것.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절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위원회(이하 '채권자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위원회는 재생절차에서 법원, 재생채권자등 또는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및 개시후 채권

제11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다음에 계기하는 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 1. 재생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재판상의 비용청구권
 - 2.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의 업무, 생활 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 3. 재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비용청구권. 다만, 재생절차종료 후에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 4. 제61조제1항(제63조, 제78조 및 제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 보수 및 보상금의 청구권
 - 5.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재생절차개시 후에 행한 자금의 차입 기타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

일본 민사재생법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의하여 재생절차개시 후에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청구권
7. 기타 재생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할 수 없는 비용의 청구권으로서 재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

제120조(개시전의 차입금등)

- ① 재생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재생절차개시 전에 자금의 차입, 원재료의 구입 기타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하는 취지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재생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21조(공익채권의 취급)

- ① 공익채권은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② 공익채권은 재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③ 공익채권에 기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채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재생채무자가 다른 환가하기 쉬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생절차개시 후에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시키거나 제공시키지 아니하고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2조(일반우선채권)

- ①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공익채권인 것은 제외한다.)은 이를 일반우선특권으로 한다.
- ② 일반우선특권은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한다.
- ③ 우선권이 일정기간내의 채권액에 대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생절차개시시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 ④ 제12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일반우선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일반의 선취특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개시후 채권)

- ① 재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공익채권, 일반우선채권 또는 재생채권인 것은 제외한다.)은 개시후 채권으로 한다.
- ② 개시후 채권은 재생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재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절차가 종료한 때,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재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재생계획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가 완료된 때 또는 재생계획이 취소된 때)까지의 기간은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 ③ 개시후 채권에 기한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 6 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제 1 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124조(재산가액의 평가등)

- ①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절차개시 후(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취임후) 지체없이 재생채무자에게 속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시에 있어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재생절차개시시에 있어서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평가인을 선임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산평가를 명할 수 있다.

제125조(법원에의 보고)

- ①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절차개시 후(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취임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생절차개시에 이른 사정
 - 2.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 및 현상
 - 3.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실의 유무
 - 4. 기타 재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재생채무자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황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독위원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채무자의 업무, 재산의 관리상황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재산상황보고집회)

- ①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된 채권자집회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들은 제125조제1항에서 제기하는 사항의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권자집회(이하 '재산상황보고집회'라 한다.)에서 법원은 재생채무자, 관재인 또는 신고재생채권자로부터 관재인의 선임 및 재생채무자의 업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 노동조합등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부인권

제127조(부인권)

- ① 다음에 제기하는 행위는 재생절차개시 후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1. 재생채무자가 재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재생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생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재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하 이 조문 내지 제129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을 후에 행한 재생채권을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공여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을 것 또는 재생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 한한다.
 3. 제2호의 행위에 있어서 재생채무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 다만,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것 및 재생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생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30일 이내에 한 담보의 공여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있어서 재생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재생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에게 있어서 그 행위 당시 재생채무자가 다른 재생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을 후에 행해진 것인 경우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생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행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하여야 할 유상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생채무자가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행한 담보의 공여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외)

- ① 제127조제1항의 규정은 재생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어음상의 채무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최종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위원(이하 '부인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이라 한다.) 또는 관재인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생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9조(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의 부인)

- ①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가등기 또는 가등락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가등기 또는 가등락 이외의 가등기 또는 가등락이 있는 후에 이에 기하여 행해진 본등기 또는 본등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0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이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그 행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131조(지급의 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기한 부인의 제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제132조(부인권행사의 효과등)

- ① 부인권의 행사는 재생채무자를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 ②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제기하는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위 당시 선의였던 때에는 그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을 상환하면 족하다.
- ③ 재생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에서 제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재생채무자의 재산중에 현존하는 경우
당해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2.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의 전부가 재생채무자의 재산중에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 3.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 재생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

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재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4.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재생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재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제133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재생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이에 의하여 원상회복된다.

제134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 다음에 계기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

2. 전득자가 재생채무자의 친족 또는 동거자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유상행위에 의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부인권의 행사)

① 부인권은 소 또는 부인의 청구에 의하여 부인권환을 가지는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소 및 부인의 청구사건은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에 관재인은 항변에 의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6조(부인의 청구)

①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를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 ③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결정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항의 소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도 같다.

제138조(부인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의 소송참가등)

- ①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은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인권의 행사와 관련된 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 및 재생채무자간의 소송이 係屬되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이 당사자인 부인의 소(제137조제1항의 소 및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된 소송절차를 포함한다.)가 係屬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는 당해 소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청구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당해 소송의 구두변론이 종결에 이를 때까지 재생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당해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소를 이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9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재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40조(사해행위취소소송등)

- ① 민법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재생절차개시 당시 係屬되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재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재생채권자 또는 파

산관재인은 당해 소송절차를 당연히 수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는 후 재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⑤ 제4항의 경우 또는 제1항의 소송절차가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후에 재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재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당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재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41조(부인의 소등 중단 및 수계)

① 다음의 각 호에서 제기하는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1. 감독명령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이 당사자인 부인의 소(제137조제1항의 소를 포함한다. 제2호에 있어서 같다.)와 관련된 소송절차,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이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한 소송절차 또는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이 수계한 제140조제1항의 소송절차

2. 관리명령

관재인이 당사자인 부인의 소와 관련된 소송절차 또는 관재인이 수계한 제140조제1항의 소송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그 후 감독위원이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또는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3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궁

제142조(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채무자의 이사, 감사, 청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이 조문 내지 제145조에 있어서는 '임원'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재생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생채무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⑦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등)

- ① 법원은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재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생채권자도 동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뜻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직권에 의한 사정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14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관한 재판)

- ① 제143조제1항의 사정재판 및 동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부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제143조제1항의 사정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① 제143조제1항의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복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 ③ 제1항의 소(제4항의 소는 제외한다.)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임원인 때에는 제143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를, 동항의 신청을 한 자인 때에는 임원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일본 민사재생법

- ④ 직권으로 행해지는 사정의 재판에 대한 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한 자가 임원인 때에는 재생채무자 등을, 재생채무자인 때에는 임원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46조

- ① 제145조제1항의 소의 구두변론은 동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 ② 제145조제1항의 소가 수 개 동시에 係屬되는 때에는 변론 및 재판은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45조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한다.
- ④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재판은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47조(사정재판의 효력)

제145조제1항의 소가 동항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사정재판은 급부를 명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절 담보권의 소멸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

- ① 재생절차개시 당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이하 이 조문, 제149조 및 제152조에 있어서 '담보권'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것인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은 법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상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은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표시
 2. 제1호 재산의 가액
 3. 소멸하는 담보권의 표시
 4. 제3호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금액
- ③ 제1항의 허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제2항의 서면(이하 이 조문 및 제149조에서 '신청서'라 한다.)과 함께 당해 신청서에 기재된 동항제3호의 담보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 내지 제153조에 있어서 '담보권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허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담보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담보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제3호의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근저당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간이 경과된 때에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본이 확정된다.

⑦ 민법 제39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취하되거나 동항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가액결정의 청구)

- ① 담보권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제148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신고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제150조에서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8조제1항의 허가를 한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이 조문 내지 제152조에서 '가액결정의 청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건은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 ④ 가액결정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관련된 절차의 비용으로서 재생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에는 재생법원은 가액결정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50조(재산가액의 결정)

- ①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생법원은 당해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생법원은 평가인의 평가에 기하여 결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담보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결정은 담보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제150조제1항의 기간(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제152조제1항에서 '청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개의 가액결정 청구사건이 동시에 係屬되는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결정은 평가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⑤ 가액결정의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생채무자등 및 담보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⑥ 가액결정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전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재생채무자등 및 담보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비용의 부담)

- ① 가액결정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제150조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 가액이 신청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부담으로, 신청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액결정을 청구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신청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비용의 금액에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비용 중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생채무자의 부담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가액결정을 청구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50조제5항의 즉시항고와 관련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즉시항고를 한 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비용에 관하여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전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52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52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등)

① 재생채무자등은 청구기간 내에 가액결정의 청구가 행해진 때 또는 가액결정의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신청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제150조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자가 가지는 담보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가 있을 때에 소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가 있을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소멸된 담보권과 관련한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재생채무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48조제1항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3조(배당등의 실시)

① 법원은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납부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표에 기하여 담보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담보권자가 2인이상이고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전으로 각 담보권자가 가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및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금전의 交付計算書を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잉여금을 재생채무자등에게 교부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85호 및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배당절차에 대하여, 동법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금의 교부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7 장 재생계획

제 1 절 재생계획의 조항

제154조(재생계획의 조항)

- ① 재생계획에서는 재생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조항과 함께 공의 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위원회가 재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 내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기타 관여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생채무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도 정할 수 있다.

제155조(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

- ①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내용은 재생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재생채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또는 소액의 재생채권이나 제84조제2항에서 제기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별단의 정함을 하고 기타 이러한 자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생계획에 의하여 채무가 부담되거나 채무기한이 유예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채무의 기한을 정한다.
- ③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등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함을 할 수 없다.

제156조(권리변경의 일반적 기준)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에서는 채무의 감면, 기한의 유예 기타 권리의 변경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57조(신고재생채권자등의 권리에 관한 정함)

- ①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에서는 신고재생채권자 및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서에 기재된 재생채권자의 권리 중 변경되어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제156조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변경한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9조 및 제16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로서 재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8조(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관한 정함)

- ① 재생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으로 되는 등 재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 또는 재생채무자 이외의 자가 재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159조(미확정의 재생채권에 관한 정함)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60조(별제권자의 권리에 관한 정함)

- ①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그 채권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생채권자로서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원본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56조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가지급에 관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산에 관한 조치도 정하여야 한다.

제161조(자본의 감소 등에 관한 정함)

- ① 재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감소하는 자본의 금액 및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재생계획에 의하여 재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정관변경을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162조(특별이익공여의 무효)

재생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재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 2 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제163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 ① 재생채무자등은 채권신고기간의 만료 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고재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4조(재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① 재생채무자는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채권 신고기간의 만료 전에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신고기간의 만료 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생계획안의 조항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65조(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

- ①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부담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정함이 있는 재생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해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제160조제2항의 가지급에 관한 정함이 있는 재생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정함과 관련한 근저당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6조(자본감소등을 정한 조항에 관한 허가)

- ① 제15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당해 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송달에 관해서는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주주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67조(재생계획안의 수정)

재생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재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하여 결의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재생채무자의 노동조합등의 의견)

법원은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경우 수정후의 재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같다.

제 3 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제169조(결의의 시기)

법원은 일반조사기간이 종료하고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의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보고 또는 제125조제1항의 보고서의 제출이 행해진 후가 아니면 재생계획안을 결의할 수 없다.

제170조(재생계획안의 배제)

법원은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제174조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생계획안을 결의할 수 없다.

제171조(채권자집회에서의 재생계획안의 결의)

① 재생계획안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 및 제1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재생계획안 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72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재생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채권자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생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생채권자(이하 이 조문 및 제172조에서 '의결권자'라 한다.)로서 출석한 자의 과반수이고, 의결권자의 의결권총액의 2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결조건이 하나가 성립한 경우 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생계획안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⑥ 재생계획안의 가결은 제1항의 채권자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⑦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계획안의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6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2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법원은 재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하여 결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제1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생계획안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해서는 재생

계획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문에 있어서 '회답기간'이라 한다.) 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0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답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한 의결권자가 과반수이고,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생계획안의 가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11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서면에 의한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또는 동항 본문의 이의가 없는 의결권을 가진 신고재생채권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이 확정된 의결권을 가진 신고재생채권자'로, '그 확정액 또는 신고액'은 '그 확정액'으로, 동조제3항 중 '제1항 본문의 이의가 있는 의결권을 가지는 신청재생채권자'는 '신고재생채권자로서 그 의결권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⑤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신청권자가 회답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동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제171조제1항의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3조(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

① 청산중이거나 특별청산중의 법인 또는 파산선고 후의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권한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소속된 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의 지사 기타 집행기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제 4 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제174조(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① 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한다.

1. 재생절차 또는 재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고 또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일 때, 다만 재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당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 민사재생법

2.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때
 3. 재생계획의 가결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 때
 4. 재생계획의 가결이 재생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 ③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및 노동조합 등은 재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 ④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결정이 있었던 뜻을 노동조합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재생계획인가의 결정등에 대한 즉시항고)

- ①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던 재생채권자가 전항의 즉시항고를 함에는 재생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동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허가의 신청에 관해서 준용한다.

제176조(재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재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의 확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177조(재생계획의 효력범위)

- ① 재생계획은 재생채권자, 모든 재생채권자 및 재생을 위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위해서 또 그러한 자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 ② 재생계획은 별채권자가 가지는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담보권, 재생채권자가 재생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재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및 재생채무자 이외의 자가 재생채권자를 위해서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8조(재생채권의 면책)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생계획의 정함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재생채무자는 모든 재생채권에 관해서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 등에 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79조(신고재생채권자 등의 권리의 변경)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재생채권자 및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부서에 기재된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변경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채권자는 그 가지는 채권이 확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서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80조(재생계획의 조항의 재생채권자표에의 기재 등)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재생계획의 조항을 재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생채권에 기초하여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에 관해서는 그 재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재생채무자, 재생채권자 및 재생을 위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권리에서 금전의 지급 기타의 급부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지는 자는 재생채무자 및 재생을 위해서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해서 그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452조 및 제45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81조(신고 없는 재생채권 등의 취급)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에 기술하는 재생채권은 제156조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변경된다.
 1. 재생채권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재생채권으로 그 사유가 제9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전에 소멸하지 않았던 것.
 2. 제1호의 결정 후에 발생한 재생채권
 3. 제10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생채무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않았던 재생채권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후의 권리에 관해서는 재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재생계획에 근거해서 변제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재생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한 때 또는 재생계획이 취소된 때)까지의 사이는 변제를 하고, 변제를 받고 기타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할 수 없다.
- ③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 등에 관해서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182조(별제권자의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행사)

재생채권자가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행사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그 채권의 부분에 관해서 인가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인정된 권리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담보권이 근저당권인 경우에 있어서 재생계획에서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에 관한 규정 및 정산에 관한 조치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3조(재생계획의 의하여 자본의 감소등이 행해진 경우의 취급)

- ① 제154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서 재생계획에 있어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인가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인가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212조제2항, 제376조제2항·제3항 및 제38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17조제2항에서 정한 사건은 재생법원이 관할한다.
- ③ 제15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재생계획에 있어서 재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정관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해서 변경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정관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계되는 신청서에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4조(중지한 절차의 실효)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파산법 제47조제2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85조(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의 효력)

- ①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재생채권에 관해서는 재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재생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재생채무자가 제102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생채권자는 재생채무자에 대해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 8 장 재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86조(재생계획의 수행)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은 신속하게 재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독위원은 재생채무자의 재생계획의 수행을 감독한다.
- ③ 법원은 재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등 또는 재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재생계획의 정함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2.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
3.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생채권을 가진 자.
- ④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담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7조(재생계획의 변경)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재생절차종료 전에 한하여 재생채무자, 관재인, 감독위원 또는 신고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재생계획의 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생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재생채권자는 절차에 참가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고, 또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하기 위한 채권자집회가 소집된 경우 종전의 재생계획에 찬성하였거나 동의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는 여기에 출석하여 변경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불인다는 뜻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가 변경계획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는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75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재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8조(재생절차의 종결)

- ① 법원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생채무자 또는 감독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재생계획이 수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에는 재생채무자 또는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감독명령 및 관리명령은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법원은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9조(재생계획의 취소)

- ①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재생계획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
 2. 재생채무자등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재생채무자가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의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서 제기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동항의 신청은 재생채권자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동호의 사유를 주장한 때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 재생채권자가 동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1월을 경과한 때 또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제기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동항의 신청은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전부(이행된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재생채권자이고 그가 가지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당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재생계획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서를 제1항의 신청을 한 자 및 재생채무자등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⑦ 제4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재생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다만, 재생채권자가 재생계획에 의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⑧ 제185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제188조제3항의 규정은 재생절차종료 전에 제4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의 취급등)

- ① 재생계획의 이행완료 전에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재생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다만, 재생채권자가 재생계획에 의하여 얻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185조 및 파산법 제338조, 제340조 및 제3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38조 및 제340조 본문 중 '강제화의'는 '재생계획'으로, '중전의 파산채권'은 '중전의 재생채권'으로, 동법 제341조 중 '파산종결'은 '재생절차종료'로, '강제화의의 효력'은 '재생계획의 효력'으로, '강제화의의 취소'는 '파산선고'로 한다.

제 9 장 재생절차의 폐지

제191조(재생계획인가 전의 절차폐지)

다음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결의에 붙이기에 족한 재생계획안 작성의 가망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된 때.
2.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그 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재생계획안이 결의에 붙이기에 족하지 아니한 것인 때.
3. 재생계획안이 부결된 때(제172조제1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붙인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동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를 포함한다.) 또는 결의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이내 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재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제192조

- ① 채권신고기간의 경과 후 재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절차개시 신청의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재생채무자, 관재인 또는 신고채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재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93조(재생채무자의 의무위반에 의한 절차폐지)

-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재생채무자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재생채무자가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행위를 한 경우
 3. 재생채무자가 제101조제4항 또는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인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94조(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재생채무자등 또는 감독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5조(재생절차폐지의 공고 등)

- ① 법원이 재생절차폐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③ 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즉시항고 및 이에 관한 결정에 대한 제19조에서 준용하는 민소소송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동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법원은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⑥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 행해진 재생절차의 폐지는 재생계획의 수행 및 이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⑦ 제185조의 규정은 제191조, 제192조제1항 또는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장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제196조(외국관재인과의 협력)

- ①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외국에서 개시된 절차로서 파산절차 또는 재생절차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관재인(당해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있어서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등은 외국관재인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97조(재생절차의 개시원인의 추정)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무자에게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98조(외국관재인의 권한등)

- ① 외국관재인은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제21조'를 '제19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 ② 외국관재인은 재생채무자의 재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외국관재인은 재생채무자의 재생절차에 있어서 제1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관재인이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의 서면을,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재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99조(상호간의 절차참가)

- ① 외국관재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생채권자로서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자를 대리하여 재생채무자의 재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재생채무자등은 신고재생채권자(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서에 기재된 재생채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로서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재생채무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그 대리하는 신고재생채권자를 위하여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하, 화해 기타 신고재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재생채권자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제1절 간이재생

제200조(간이재생의 결정)

- ①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의 경과 후 일반조사기간의 개시 전에 재생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간이재생의 결정(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이 경우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은 신고재생채권자의 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는 신고재생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재생채권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동시에 제4장 제3절에서 정하는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등은 노동조합등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동향 후단의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제174조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01조(간이재생결정의 효력등)

- ①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사기간에 관한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법원은 간이재생의 결정과 동시에 제119조제1항 후단의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문, 제2항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제200조제1항 후단의 재생계획안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호출장을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노동조합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채권자집회에 대해서는 제1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즉시항고등)

- ① 제200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③ 간이재생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간이재생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없이 일반조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일반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의 송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간이재생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는 재생채무자등이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계의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03조(채권자집회의 특칙)

- ① 제20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집회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 후단의 재생계획안만을 결의에 붙일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산상황보고집회에 있어서의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보고 또는 제125조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가 아니라면 제1항의 재생계획안을 결의에 붙일 수 없다.
- ③ 제1항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신고재생채권자가 제200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1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해 신고재생채권자는 당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재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신고재생채권자가 제1항의 채권자집회의 개시 전에 법원에 대하여 당해 동의를 철회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재생계획의 효력등의 특칙)

- ①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모든 재생채권자의 권리(재생절차개시전의 벌금등은 제외한다.)는 제156조의 일반적 기준에 따

라 변경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182조 및 제189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82조 중 ‘인가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또는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후의 권리’ 및 제189조제3항 중 ‘재생계획의 정함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2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후의 권리’로 한다.

제205조(재생채권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장 제3절, 제157조, 제159조, 제164조제2항 후단,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제1항·제2항, 제172조, 제178조 내지 제180조, 제181조제1항·제2항, 제185조(제189조제8항, 제190조제2항 및 제19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6조제3항·제4항 및 제18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동의재생

제206조(동의재생의 결정)

①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의 경과 후 일반조사기간의 개시 전에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의재생의 결정(재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 및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이 경우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은 모든 신고채권자가 서면에 의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제4장 제3절에서 정하는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산상황보고집회에서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보고 또는 제215조제1항의 보고서의 제출이 행해진 후가 아니라면 동의재생을 결정할 수 없다.

③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문, 이유의 요지 및 제1항 후단의 재생계획안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74조제3항과 제20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74조제5항 및 제201조제1항의 규정은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즉시항고)

① 제206조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즉시항고, 이에 관한 결정에 대한 제19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동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 민사재생법

항고의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제202조제3항의 규정은 동의재생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항에서 준용하는 제202조제3항의 일반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의 송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8조(동의재생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 ① 동의재생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06조제1항 후단의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73조, 제202조제5항 및 제204조의 규정은 동의재생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9조(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장 제3절, 제157조, 제159조, 제164조제2항 후단, 제7장 제3절, 제174조, 제175조, 제178조 내지 제180조, 제181조제1항·제2항, 제185조(제189조제8항, 제190조제2항 및 제195조제7항에서 준용한다.), 제186조제3항·제4항 및 제18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장 벌칙

제210조(사기재생죄)

- ① 채무자가 재생절차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파기하거나 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알기에 족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파기하는 경우.
-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채무자의 지배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제3자의 사기재생죄)

채무자 및 제2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아니면서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생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2조(수뢰죄)

- ① 감독위원, 조사위원, 관재인, 보전관리인, 관재인대리 또는 보전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생채권자, 대리위원 또는 이러한 자의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이 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 ② 감독위원, 조사위원, 관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하 이 조문에서 ‘감독위원등’이라 한다.)이 법인인 경우 감독위원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하고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독위원등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감독위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감독위원등에게 뇌물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 ③ 법인 또는 법인인 감독위원등이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13조(증뢰죄)

제2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 제의 또는 약속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4조(보고 및 검사거절의 죄)

채생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채생채무자의 이사, 감사, 청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제59조(제63조, 제78조 및 제8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5조(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채생채무자 또는 재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백만엔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화의법 및 특별화의법의 폐지)

화의법 및 특별화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화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화의개시의 신청에 관한 화의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이 경우 이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11조제6항, 제93조제2호·제4호 및 제127조제1항제2호 중 ‘정리개시’는 ‘화의개시, 정리개시’로, 제16조제2항제1호 중 ‘또는 사기파산’은 ‘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으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중 ‘정리절차’는 ‘화의절차, 정리절차’로 한다.

제 4 조(민법등의 일부개정)

다음에 제기하는 법률의 규정 중 ‘화의개시’는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1. 민법 제378조의3제2항
2. 선원보험법 제33조의12의3제1항제1호(다)목
3. 농수산협동조합저금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제68조의3제2항
4. 고용보험법제 2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제 5 조(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6 중 ‘및 화의절차’를 삭제한다.

제135조의59를 삭제한다.

제135조의60 중 ‘제401조제2항의 화의사건 및 동법’을 삭제하고 동조를 제135조의59로 한다.

제135조의61 중 ‘제4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 및 동법’을 삭제하고 동조를 제135조의60으로 한다.

제135조의62를 삭제하고 제135조의63을 제135조의61로 하며 제135조의64를 제135조의62로 한다.

제138조의14 중 ‘제135조의64’를 ‘제135조의62’로 개정한다.

제138조의15 중 ‘, 제135조의55’를 ‘및 제135조의55’로 개정하고 ‘제135조의58’, 및 ‘및 제135조의61’을 삭제한다.

제 6 조(상법의 일부개정)

상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9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383조제1항 중 ‘, 화의절차’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또는 화의’ 및 ‘, 화의절차’를 삭제한다.

제386조제1항제4호 및 제391조제2항 중 ‘또는 화의’를 삭제한다.

제4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1조 삭제

제 7 조(파산법의 일부개정)

파산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6조의2제2항 중 ‘면책’을 ‘파산자는 면책’으로, ‘또는 제347조’를 ‘, 제347조’로 개정하고 ‘파산폐지의 신청’ 아래에 ‘또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추가하며 동조제4항 다음에 1항을 추가한다.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각, 재생절차폐지 또는 재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6조의21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다음으로 1호를 추가한다.

4.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366조의21제2항 중 ‘또는 강제화의취소’를 ‘, 강제화의취소 또는 재생계획취소’로, ‘또는 제2호’를 ‘, 제2호 또는 제4호’로 개정한다.

제389조 삭제

제 8 조(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

증권거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7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64조의10제1항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79조의53제1항제2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 9 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일부개정)

중소기업보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것’으로 개정하고, 동항제1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10조(회사갱생법의 일부 개정)

회사갱생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화의개시’를 삭제하고, 『まつ消』를 『抹消』로, ‘경우에, 파산의 등기’를 ‘경우에 있어서 파산의 등기 또는 재생절차개시의 등기’로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재생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 중 ‘전항’을 ‘전항 본문’으로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조제1항’을 ‘전조제1항 본문’으로, ‘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개시의 신청’을, ‘갱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그 절차의 개시의 결정’으로, ‘파산의 신청(申立)’을 ‘파산의 신청(申立て)’으로 개정한다.

다.

제27조의 표제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하고 동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본문’으로, ‘화의의 신청’을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개정하며 동항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항 중 ‘제26항’을 ‘제26항 본문’으로, ‘화의법’을 ‘민사재생법’으로,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갱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재생절차가 효력을 상실한 후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재생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재생법 제93조제2호·제4호(상계의 금지) 및 제1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128조제2항, 제129조제1항 및 제131조(부인권)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시에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 다음의 조문을 추가한다.

제28조의2 갱생절차개시신청기간, 제273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절차 폐지 또는 갱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의 확정에 따라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재생절차가 수행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38조 중 ‘左의’를 ‘다음에 계기하는’으로,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개정하고 동조제4호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하며 동조제5조 중 ‘가능’을 ‘가능성’으로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하고 ‘파산절차’의 아래에, ‘재생절차’를 추가하며, ‘화의절차’를 삭제하며 동조제6항 중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공여하도록(供させ) 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하도록(供させない) 하고’를 ‘세우도록(立てさせ) 하거나 세우지 아니하도록(立てさせない) 하고’로, ‘취소(取消)’를 ‘취소(取消し)’로, ‘단지’를 ‘다만’으로 개정하고 ‘파산절차’의 다음에 ‘및 재생절차’를 추가한다.

제78조제1항 중 ‘左에’를 ‘다음에’로, ‘단지’를 ‘다만’으로 개정하고 동항제2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중 ‘발행(振出)’을 ‘발행(振出し)’으로,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하고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단지’를 ‘다만’으로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또는 파산법’을 ‘파산법 또는 민사재생법’으로 개정하고 ‘부인의 소송’ 아래에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송’을 추가하며 동조제2항 중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 또는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관재인 또는 부인권한을 가진 감독위원’으로 개정한다.

제163조 중 ‘左의’를 ‘다음에 계기하는’으로 개정하고, 동조제2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동조제4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신청(申立)’을 ‘신청(申立て)’으로, ‘단지’를 ‘다만’으로 개정한다.

제264조제1항 중 ‘파산절차’의 아래에 ‘, 재생절차(민사재생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동조제6항’을 ‘제67조제6항’으로 개정하며 동조제2항 중 ‘단지’를 ‘다만’으로 개정하며 ‘제외한다.’의 아래에 ‘및 재생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재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민사재생법 제50조제2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282조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본문’으로 개정하고 ‘제27조’를 ‘제27조제1항 본문’으로, ‘화의신청’을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개정한다.

제11조(국가의채권의관리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국가의채권의관리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또는 화의법’을 삭제하고, ‘강제화의 또는 화의의 조건’을 ‘강제화의의 조건, 민사재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붙여지거나 붙여야 할 재생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동의재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 제출된 재생계획안)’으로, ‘동의한다’를 ‘동의하거나 찬성한다’로 개정한다.

제12조(할부판매법의 일부개정)

할부판매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것’으로, 동항제5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13조(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

상업등기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또는’의 다음에 ‘민사재생법 또는’을 추가한다.

제14조(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15조(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의 7항 중 ‘또는 제52조’를 ‘또는 제52조 또는 민사재생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동표의 12항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동표의 17항 (라)

일본 민사재생법

중 ‘화의법’을 ‘민사재생법’으로 개정하고, 동항 (라) 중 ‘복권의 신청’의 다음에 ‘, 민사재생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소멸의 허가의 신청’을 추가한다.

제16조(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의 일부개정)

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것’으로, 동항제5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17조(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의 일부개정)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것’으로, 동항제1호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18조(가등기담보계약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가등기담보계약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항’의 다음에 ‘ 및 제4항’을 추가하고, 동조제4항 중 ‘파산절차’의 다음에, ‘재생절차’를 추가하고 동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의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항을 추가한다.

3. 재생채무자의 토지등에 관하여 행해지고 있는 담보가등기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민사재생법 중 저당권을 가진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은행법등의 일부개정)

다음에 제기하는 법률의 규정 중 ‘화의절차’는 이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1. 은행법 제46조제1항
2. 특정목적회사에의한특정자산의유동화에관한법률 제111조제4항제2호

제20조(보험업법의 일부개정)

보험업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제135조의64’를 ‘제135조의62’로 개정한다.

제151조 중 ‘ 및 제394조 내지 제403조’를 ‘, 제394조 내지 제400조’로, ‘등록, 화의절차의 개시, 파산절차의 개시 및 파산법의 규정의 준용’을 ‘등록), 제402조 (파산절차의 개시) 및 제403조(파산법의 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한다.

제271조제1항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21조(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0조까지’의 다음에 ‘(동조제4항을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화의개시』’를 ‘『갱생절차개시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갱생계획인가의 등기』와 『

로, '특별청산개시'를 '특별청산개시의 등기'로, '『화의개시』'를 '『파산의 등기 또는 재생절차개시의 등기』와 동조제3항 중 '『재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재생계획인가의 취소의 등기』로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0조까지'의 다음에 '(동조제4항을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의 등기』로 있는 것은 '『재생계획인가의 등기』와 『로, '특별청산개시'를 '특별청산개시의 등기'로, '『화의개시』'를 '『파산의 등기 또는 재생절차개시의 등기』와 동조제3항 중 '『재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로 있는 것은 '『재생계획인가의 취소의 등기』로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20조' 다음에 '(제4항을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동조 중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를 ' 및 제24조'로 개정하고, '파산선고 후의 협동조직금융기관에 관하여'의 다음에 '동법 제27조 내지 제28조의2의 규정은 협동조직금융기관에 관하여'를,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 동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의2 중 '제67조 제1항』으로 있는 것은 '『재생특례법 제4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과'를, '제24조 중 『의 다음에 '『재생절차개시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을 추가하고, '또는 화의절차'를 '『재생계획인가』로, '『화의절차』'를 '『재생계획인가』'로, '제25조 중'을 '제25조 및 제28조의2 중'으로 개정한다.

제31조 중 '화의절차'를 '재생절차'로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의절차, 정리절차 및 특별청산절차'를 '중지하고, 정리절차 및 특별청산절차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로, "화의절차"를 "중지한다"로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49조제1항 중 '화의개시'를 '재생절차개시'로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또는 파산법'을 ' 파산법 또는 민사재생법'으로 개정하고, '부인의 소송' 다음에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송'을 추가하며, 동조제2항 중 '또는 파산관재인'을 ' 파산관재인 또는 재생절차에 있어서의 관재인 또는 부인권한을 가지는 감독위원'으로 개정한다.

제156조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본문'으로 개정한다.

제22조(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한민법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한민법의특례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 및 회사갱생법'을 ' 민사재생법 제12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회사갱생법'으로 바꾼다.

제23조(금융기관등이행한특정금융거래의일괄청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금융기관등이행한특정금융거래의일괄청산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파산절차 또는'을 '파산절차, 재생절차 또는'으로 개정하고, 동조제4항 중 '파산'의 다음에 ' 재생절차개시'를 추가한다.

제3조 중 '파산선고 또는'을 '파산선고,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으로 개정하고, 동

일본 민사재생법

- 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의 다음에 하나의 호를 추가한다.
2. 민사재생법 재생절차개시시에 재생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 또는 재생채권

제24조(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또는 제44호’를 ‘, 제44호 또는 제60호’로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화회의 개시결정’을 ‘재생절차개시의 결정’로 개정한다.

별표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호를 추가한다.

60. 민사재생법 제210조(사기재생) 또는 제211조(제3자의 사기재생)의 죄

제25조(민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신청에 기초하여 이 법률의 시행전 또는 시행후에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 또는 결정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에 제기하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급은 이 법률의 부칙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1. 민법 제398조의3제2항
2. 선원보험법 제33조의12의3제1항제1호(다)
3.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제68조의3제2항
4. 고용보험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다)
5.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의36
6. 상법 제30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83조제1항·제2항
7. 증권거래법 제54조제1항제7호, 제64조의10제1항 및 제79조의53제1항제2호
8.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2조제3항제1호
9. 회사갱생법 제20조제2항, 제24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호, 제6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및 제163조제2호 및 제4호
10. 국가의채권의관리등에관한법률 제30조
11. 할부판매법 제27조제1항제5호
12.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3조제1항
13.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별표 제1의 12항 및 17항(라)
14. 적립식택지건물판매업법 제36조제1항제5호
15.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제2조제2항제1호
16. 은행법 제46조제1항
17. 특정목적회사에의한특정자산의유동화에관한법률 제111조제4항제2호
18. 보험업법 제66조, 제151조 및 제271조제1항
19.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49조제1항
20.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일본 민사재생법

민생재생규칙
(2000년 1월 31일 최고법원규칙 제3호)

목 차

- 제 1 장 총칙(제1조 ~ 제11조)
- 제 2 장 재생절차의 개시
 - 제 1 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제12조 ~ 제16조)
 - 제 2 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제17조 ~ 제19조)
- 제 3 장 재생절차의 기관
 - 제 1 절 감사위원(제20조 ~ 제25조)
 - 제 2 절 조사위원(제26조)
 - 제 3 절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제27조)
- 제 4 장 재생채권
 - 제 1 절 재생채권자의 권리(제28조 ~ 제30조)
 - 제 2 절 재생채권의 신고(제31조 ~ 제35조)
 - 제 3 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제36조 ~ 제47조)
 - 제 4 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제48조 ~ 제54조)
- 제 5 장 공익채권(제55조)
- 제 6 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 제 1 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제56조 ~ 제65조)
 - 제 2 절 부인권(제66조 · 제67조)
 - 제 3 절 법인의 임원 등의 책임추궁(제68조 · 제69조)
 - 제 4 절 담보권의 소멸(제70조 ~ 제82조)
- 제 7 장 재생계획
 - 제 1 절 재생계획의 조항(제83조)
 - 제 2 절 재생계획안의 제출(제84조 ~ 제89조)
 - 제 3 절 재생계획안의 결의(제90조 ~ 제92조)

민생재생규칙

제 4 절 재생계획의 인가 등(제93조)

제 8 장 재생계획인가후 절차(제94조 ~ 제96조)

제 9 장 재생절차의 폐지(제97조 · 제98조)

제10장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제99조 · 제100조)

제11장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제 1 절 간이재생(제101조 ~ 제104조)

제 2 절 동의재생(제105조 ~ 제106조)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재생채무자의 책무등)

- ① 재생채무자는 재생절차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는 재생채권자에게 재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재생절차에 있어서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하는 재생채무자의 활동은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조(신청의 방식등)

- ① 재생절차에 관한 신청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생절차에 관한 신고, 법원의 보고 및 재생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자가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을 전자적 처리장치에 의한 디스크 기타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복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조서)

재생절차에 있어서 기일(구두변론의 기일을 제외한다.)의 조서는 재판장이 작성을 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서기관이 작성한다.

제 4 조(즉시항고에 관한 사건기록의 송부·법 제9조)

- ①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재생사건의 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재생법원의 법원서기관은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항고법원의 법원서기관에게 송부하면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사건의 기록이 송부된 경우 항고법원이 재생사건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항고법원의 법원서기관은 신속하게 그 송부를 재생법원의 법원서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 5 조(공고사무의 취급등·법 제10조)

- ① 공고에 관한 사무는 법원서기관이 취급한다.
- ② 민사재생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때는 법원서기관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주소 및 발송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조(관청등의 통지)

- ① 법인인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 또

민생재생규칙

는 목적인 사업에 관청 기타 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의 취지를 그 관청 기타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의 취소, 재생절차폐지, 재생계획인가 또는 불인가 혹은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재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절차·법 제11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촉탁은 촉탁서에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법인의 재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서의 등본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동향에 규정하는 처분의 결정서의 등본
3.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촉탁을 제외한다.)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의 결정서의 등본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동향 각 호에 정한 결정의 결정서의 등본

② 재생계획인가의 등기의 촉탁은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절차종결의 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재생절차의 종료 등에 수반하는 파산선고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은 파산의 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제 8 조(등기가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의 절차·법 제12조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촉탁은 촉탁서에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등기가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등의 촉탁)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당해 보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재생절차개시결정서의 등본
3.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재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결정서의 등본
4.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재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5. 법 제13조(부인의 등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결정서의 등본

-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은 신속하게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의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5호(등록으로의 준용)의 규정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은 동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법 제17조)

- ① 법 제17조(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의 규정은 이 규칙(이 규칙에서 준용하는 다른 규칙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서등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 그 정보,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그 사본의 청구는 당해 청구에 관한 문서 기타 물건을 특정하는 충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조(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의 신청방식등·법 제18조)

- ① 법 제18조(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제1항의 신청은 支障부분을 특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당해 신청에 관한 문서등의 제출시에 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에 관한 문서등에서 支障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支障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관한 문서등에서 당해 결정에 의하여 특정된 支障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에 의하여 특정된 支障부분과 당해 결정에 의하여 특정된 支障부분이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법 제19조)

재생절차에 대하여는 특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재생절차의 개시

제 1 절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제12조(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기재사항·법 제21조)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민생재생규칙

2. 재생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5. 재생계획안의 작성방침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 ② 재생계획안의 작성방침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의 기재는 가능한 한 예상되는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변경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협력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3조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는 제12조(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기재사항)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채무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목적, 임원의 성명, 주식 또는 출자의 상황 기타 당해 법인의 개요
 2. 재생채무자가 사업을 행한 때는 그 사업의 내용 및 상황,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상황
 3. 재생채무자의 자산, 부채 기타 재산의 상황
 4.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의 발생에 이른 사정
 5.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해지고 있는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대해 신청인 알고 있는 것
 6. 재생채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때는 그 명칭, 조합원의 수 및 대표자의 성명
 7. 재생채무자에 대한 법 제76조(외국관재인과의 협력)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때는 그 취지
 8. 재생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의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청 기타 기관의 허가가 있는 때는 그 관청 기타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법 제5조(재생사건의 관할)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제외한다.)에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행한 때는 동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재생사건의 재생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사건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의 첨부서면·법 제21조)

-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생채무자가 개인인 때는 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의 사본
 2. 재생채무자가 법인인 때는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부의 등본
 3.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포함한다.) 및 그가 가지는 채권 또는 담보권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자의 일람표
 4. 재생채무자의 재산목록
 5.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일전 3년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작성된 재생채무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재생채무자가 사업을 행하고 있는 때는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일 전 1년간 재생채무자의 자금내역의 실적을 명확하게 하는 서면 및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일 이후 6월간의 재생채무자의 자금내역의 예건을 명확하게 하는 서면
7. 재생채무자재산에 속하는 권리로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해진 것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등본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
8. 재생채무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있는 때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제15조(법원서기관의 사실조사·법 제21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또는 법 제25조(재생절차개시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법원서기관에게 명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예납·법 제24조)

- ① 법 제24조(비용의 예납)제1항의 금액은 재생채무자의 사실의 내용, 자산 및 부채 기타의 재산상황, 재생채권자의 수, 감독위원 기타 재생절차의 기관의 선임의 요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는 재생절차개시후의 비용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재산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예납한 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게 다시 예납시킬 수 있다.

제 2 절 재생절차개시의 결정

제17조(재생절차개시의 결정서등·법 제33조)

-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②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서에는 결정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등·법 제3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일부터 2주간이상 4월이하(알고 있는 재생채권자로 일본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주간이상 4월이하)
2. 재생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기간
그 기간의 초일과 제1호의 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1주간이상 2월이하의 기간을 두고 1주간이상 3주간이하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법 제43조)

- ① 법원서기관은 법 제43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송달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및 주주가 재생채무자에게 통지한 주소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주소 및 발송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생절차의 기관

제 1 절 감독위원

제20조(감독위원의 선임등·법 제54조)

- ① 감독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감독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임원 또는 직원 중 감독위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를 지명하고,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재생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서기관은 감독위원에 대해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감독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서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감독위원의 동의신청방식등·법 제54조)

- ① 감독위원의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 및 감독위원의 동의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생채무자의 감독위원에 대한 보고)

- ① 법원은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생채무자에게 감독위원에 대한 보고를 요하는 행위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재생채무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 신속하게 그 취지를 감독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위원에 대한 감독등·법 제57조)

- ① 법원은 보고서의 제출을 독촉하는 것 기타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를 법원서기관에게 명하여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감독위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4조(감독위원회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법 제59조)

감독위원회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감독위원의 보수의 금액·법 제61조)

법원이 정한 감독위원의 보수의 금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부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사위원

제26조(조사위원의 선임등·법 제62조등)

- ① 조사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적합한 자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감독위원의 선임등)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등, 감독위원회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및 감독위원의 보수금액)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

제27조(감독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법 제78조등)

제20조(감독위원의 선임등) 및 제23조 내지 제25조(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등, 감독위원회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및 감독위원의 보수금액)의 규정은 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은 관재인대리 및 보전관리인대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재생채권

제 1 절 재생채권자의 권리

제28조(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의 통지·법 제89조)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재생채권자 및 법 제101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서에 기재된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는 법 제89조(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생채무자등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당해 변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대리위원의 권한의 증명등·법 제90조)

- ① 대리위원의 권한은 이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권자는 대리위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보상금등·법 제91조)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개시후에 재생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재생채무자의 주식 기타 재생채무자에 대한 출자에 의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 제91조(보상금등)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얻은 후 재생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재생채무자의 주식 기타 재생채무자에 대한 출자에 의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 2 절 재생채권의 신고

제31조(신고의 방식·법 제94조)

① 재생채권의 신고서에는 각 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원인, 의결권의 금액 및 법 제94조(신고)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2. 법 제84조(재생채권으로 되는 청구권) 제2항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는 그 취지
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취지
4. 재생채권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송이 係屬되어 있는 법원,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사건의 표시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동항에서 제기하는 사항외에 재생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송달을 받는 장소 및 송달수취인의 신고는 가능한 한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행하여야 한다.
- ④ 재생채권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사본 또는 판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재생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신고서의 부분의 첨부등)

- ① 재생채권의 신고서에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지체없이 부분을 재생채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사항 등의 변경)

- ① 신고가 있는 재생채권의 소멸 기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재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재생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등도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당해 신고를 하여야 할 재생채권자에게 당해 신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미리 통지한 경우 당해 기간 내에 당해 재생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기간은 1주간이상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는 재생채권의 소멸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의 내용 및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재생채무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고서에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32조(채권신고서의 부분의 첨부등)의 규정은 재생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⑦ 제1항, 제2항 본문,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01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서에 기재된 재생채권의 소멸 기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부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재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신고의 추완등의 방식·법 제95조)

- ① 법 제95조(신고의 추완등)제1항의 신고의 추완을 하는 때에는 재생채권의 신고서에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 및 그 사유가 소멸한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5조제3항의 신고를 한 때는 재생채권의 신고서에 당해 신고를 하는 재생채권이 발생한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5조제5항의 변경의 신고서에는 당해 변경의 내용·원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32조(채권신고서의 부분의 첨부등)의 규정은 제3항의 신고서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신고명의를 변경의 방식·법 제96조)

- ① 신고명의를 변경신고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명의를 변경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2.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일 및 원인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32조(채권신고서의 부분의 첨부등)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서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36조(재생채권자표의 작성 및 기재사항·법 제99조)

- ① 재생채권자는 일반조사기간의 개시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권자표에는 각 채권자에 대하여 그 내용·원인, 의결권의 금액 및 법 제 94조(신고)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금액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법 제84조(재생채권으로 되는 청구권)제2항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는 그 취지
 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취지

제37조(증거서류의 송부·법 제101조등)

재생채무자등은 인부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고재생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재생채권에 관한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인부서의 기재의 방식등·법 제101조등)

- ① 법 제101조(인부서의 작성 및 제출)제1항·제2항 또는 제103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를 인부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이유의 요지를 부기할 수 있다.
- ② 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되지 아니한 재생채권을 인부서에 기재하는 때에는 자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재생채권의 원인
 3. 법 제84조(재생채권으로 되는 청구권)제2항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는 그 취지
 4. 법 제94조(신고)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5.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취지
 6. 재생채권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때는 그 소송이 係屬되어 있는 법원,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사건의 표시
- ③ 인부서에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의 방식·법 제102조등)

- ①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 법 제1항·제2항 또는 제103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4항의 서면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및 이의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38조(인부서의 기재의 방식등)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일반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등의 송달·법 제102조등)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 있어서의 조사)제4항(법 제103조(특별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인부의 변경등)

- ① 재생채무자등은 인부서의 제출후에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를 인정하는 취지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신고재생채권자 또는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③ 제38조(인부서의 기재의 방식등)제3항 규정은 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인부서등의 부분에 의한 열람등)

인부서, 제39조(이의의 방식)제1항의 서면 및 제41조(인부의 변경등)제3항의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는 제출된 부분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인부서등의 개시)

- ① 재생채무자등은 인부서 또는 제41조(인부의 변경등)제1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재생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조사기간중은 이러한 서면의 사본을 재생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항의 서면의 사본을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도 비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채권자는 재생채무자등에 대하여 당해 재생채권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특별조사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이의의 통지)

신고재생채권자가 다른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때는 법원서기관은 당해 재생채권을 가지는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재생채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법 제105조)

- ① 법 제105조(재생채권의 사정의 재판)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② 신청의 이유에 있어서는 신청을 이유로 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시에 입증을 요하는 사유마다 그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증을 요하는 사유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05조제1항 본문의 사정의 신청을 하는 재생채권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직송(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직접의 송부를 말한다. 이하 마찬가지이다.)하여야 한다.

제46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법 제106조등)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재생계획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受訴법원이 정한다.

제47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법 제110조)

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행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 제110조(재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판결의 판결서의 등본 및 당해 판결의 확정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채권자집회 및 채권자위원회

제48조(채권자집회 소집의 신청방식·법 제114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신청서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감독위원등의 채권자집회에의 출석·법 제106조)

- ①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감독위원을 출석시키고,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의결권금액등을 정한 결정의 변경의 신청방식·법 제117조)

채권자집회의 기일에서 행하는 제117조(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제4항의 신청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1조(대리상의 증명·법 제117조)

재생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법 제118조)

법 제118조(채권자위원회)제1항제1호의 최고법원규칙에서 정한 인원은 10인으로 한다.

제53조(채권자위원회의 승인의 신청방식·법 제118조)

① 법 제118조(채권자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1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제2호의 위원이 가지는 재생채권의 내용
4. 제2호의 위원회가 재생채권자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기재한 서면
2. 재생채권자의 과반수가 전호의 위원회가 재생절차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서면

제54조(채권자위원회의 활동·법 제118조)

① 재생절차에서 채권자위원회의 활동은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② 채권자위원회는 그 취지를 구성하는 위원 중 연락을 담당하는 자를 지명하고,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재생채무자등 및 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위원회는 이를 구성하는 위원 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정함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익채권

제55조(공익채권의 취지의 허가에 대신하는 승인을 행한 것의 보고·법 제120조)

감독위원회는 법 제120조(개시전의 차입금 등)제2항의 승인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 1 절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등

제56조(가액의 평가기준등·법 제124조)

- ① 법 제124조(재산가액의 평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재생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법 제124조제2항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에는 그 작성에 관하여 사용한 재산의 평가방법 기타 회계방침을 注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표에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재산상황보고집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보고서의 제출시기등·법 제125조)

- ① 재생채무자등은 재산상황보고집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법 제125조(법원에의 보고)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조(가액의 평가기준등)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8조(대차대조표등의 보고서의 첨부등·법 제125조)

- 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 제125조(법원에의 보고)제1항의 보고서에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일전 3년이내에 종료한 재생채무자의 영업연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영업연도등'이라 한다.)의 종료일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및 당해 영업연도 등의 손익계산서, 그리고 최종의 당해 연도등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재생절차개시일까지의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56조(가액의 평가기준등)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59조(보고서의 제출의 독촉등·법 제125조)

법원은 재생채무자(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 같다.)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독촉하거나 재생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하는 것 기타 재생채무자에 의한 재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법원서기관에게 명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재산상황보고집회의 소집·법 제126조)

- ① 재산상황보고집회의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일부터 2월이내의 날로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재산상황보고집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한 때는 재생절차개시의 공고와 법 제115조(채권자집회의 기일의 출석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법 제35조(개시의 공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

달과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대해서도 같다.

제61조(채권자설명회의 개최)

① 재생채무자등(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에서 같다.)은 채권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채권자설명회에서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상황 또는 재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재생채무자등이 채권자설명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의 요지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재산목록등의 부분에 의한 열람등)

법 제124조(재산가액의 평가등)제2항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그리고 법 제125조(법원에의 보고)제1항 보고서의 열람 또는 사본은 제출된 부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3조(재산상황의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주지)

재생채무자등은 재산상황보고집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제출한 법 제125조(법원에의 보고)제1항의 보고서의 요지를 알고 있는 재생채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보고서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 채권자설명회의 개최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재산목록등의 개시)

① 재생채무자등이 법 제124조(재산가액의 평가등)제2항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또는 법 제125조(법원에의 보고)제1항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재생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생계획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서면의 사본을 재생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채무자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생채무자등은 재생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항의 서면의 사본을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도 비치할 수 있다.

제65조(재산의 보관방법등)

법원은 금전 기타 재산의 보관방법 및 금전의 수지에 대하여 필요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제 2 절 부인권

제66조(부인의 청구의 방식등·법 제136조)

① 부인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청구의 이유에 있어서는 부인의 청구원인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입증을 요하는 사유마다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동항에 해당하는 사항외 부인의 청구를 하는 부인권을 가지는 감독위원이나 관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입증을 요하는 사유에 대해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인권환을 가지는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 제1항의 청구서를 직송하여야 한다.

제67조(부인의 소의 係屬의 통지등·법 제138조)

① 법 제138조(부인권환을 가지는 감독위원의 소송참가등)제2항에 규정하는 부인의 소가 係屬된 때에는 감독위원은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규칙 제20조(보조참가의 신고서의 송달등)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서의 송달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 3 절 법인의 임원등의 책임의 추궁

제68조(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방식·법 제142조)

① 법 제142조(법인의 임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제1항의 보전처분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신청의 이유에서는 보전하여야 할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입증을 요하는 사유마다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법 제143조)

① 법 제14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의 신청방식등) 제1항의 사정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신청의 이유에서는 신청을 이유로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입증을 요하는 사유마다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동항에 해당하는 사항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증을 요하는 사유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재생채무자등 또는 재생채권자는 법 제143조제1항의 사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직송하여야 한다.

제70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기재사항 · 법 제148조)

- ①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2항의 서면에는 동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148조제3항에 규정하는 담보권자(이하 이 절에서 ‘담보권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법 제148조제2항 제1호의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결할 가능성이 없는 재산인 사유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동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재생채무자등 또는 그 대리인 및 담보권자의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면 · 법 제148조)

-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1항의 허가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48조제2항제1호의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부의 등본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
 - 2. 법 제148조제2항제2호의 가액의 근거를 기재한 서면
 - 3. 법 제148조제2항제3호의 담보권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제72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서의 송달등 · 법 제148조)

- ①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3항의 신청서의 송달은 재생채무자등으로부터 제출된 부분에 의한다.
- ② 담보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행해진 때 법원서기관은 그 취지를 재생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후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 ①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1항의 허가신청을 재생채무자등은 제72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서의 송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전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제148조제3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동조제2항제3호의 담보권을 새롭게 가지는 것으로 된 자가 있는 경우를 알고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재생채무자등이 법 제148조제2항제1호의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부의 등본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의 취하의 통지)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1항의 허가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서기관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담보권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가액결정의 청구방식등 · 법 제149조)

① 가액결정의 청구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생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149조(가액결정의 청구)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표시 및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액의 결정을 요구하는 취지
-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받은 결정서 및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액결정의 청구를 한 담보권자는 재생채무자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액결정의 청구를 하는 담보권자가 제1항제3호의 재산(제76조(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 제78조(평가에 대한 협력)제2항 및 제79조(재산평가의 기준 등)제1항·제2항·제4항에서는 '재산'이라 한다.)의 평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평가를 기재한 문서를 보유하는 때에는 재생법원에 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재생채무자등이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생채무자등은 재생법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이 토지인 때에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등기부의 등본
2. 재산이 건물인 때에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등기부의 등본
3.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당해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토지인 때에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을, 당해 부동산이 건물인 때에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17조의 지도 및 건물소재도의 사본
4. 재산의 소재지에 미치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기재한 도면
5.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41조제9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77조(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취지의 통지)

- ① 담보권자가 수인인 경우 법원서기관은 그 전원(가액결정의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개의 가액결정의 청구사건이 동시에 동향의 통지는 최초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하면 된다.

제78조(평가인에 대한 협력)

- ① 법 제150조(재산가액의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이 선임된 경우 재생채무자등 및 가액결정의 청구를 한 담보권자는 평가인의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② 평가인은 가액결정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담보권자에 대하여도 재산의 가액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재산평가의 기준등·법 제150조)

- ① 법 제150조(재산가액의 결정)제1항의 평가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② 평가인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평가를 하는 때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의 환경, 그 종류, 규모, 구조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기타 평가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③ 민사집행규칙(1979년 최고법원규칙 제5호) 제30조(평가서)제1항의 규정은 평가인이 부동산평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평가인이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평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80조(가액결정서등의 송달까지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

- ① 담보권자의 전원에 대해 법 제150조(재산가액의 결정)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된 때 법원서기관은 그 취지를 재생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73조(담보권소멸의 허가의 신청후 담보권이전등의 신고등)의 규정은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중 ‘제72조(담보권소멸의 허가신청서의 송달등) 제2항’은 ‘제80조(가액결정서등의 송달까지 담보권의 이전등의 신고등)’으로, ‘법원’은 ‘재생법원 또는 항고법원’으로, 동조제2항 중 ‘법 제148조제2항제1호’는 ‘법 제149조(가액결정의 청구)제1항’으로, ‘제72조제2항’은 ‘제80조제1항’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81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기한등·법 제152조)

- ① 법 제152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등)제1항의 기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일부터 1월이내의 일로 하여야 한다.
- 1. 법 제150조(재산가액의 결정)제3항에 규정하는 청구기간내에 가액결정의 청구가 없는 때 또는 가액결정의 청구중 전부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 청구기간을 경과한 일
- 2. 제1호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액결정의 청구중 전부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 가액결정의 청구중 전부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일
- 3. 법 제150조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당해 확정된 일

민생재생규칙

- ② 제1항의 기한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서기관은 재생채무자등에 대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은 촉탁서에 법 제148조(담보권소멸의 허가등)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제11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규칙 제4조(최고 및 통지)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배당등의 실시·법 제153조)

- ① 민사집행규칙 제12조(민사집행의 조서), 제59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배당 기일등의 지정), 제60조(계산서의 제출의 최고) 및 제61조(매각대금의 교부등의 절차)의 규정은 법 제153조(배당등의 실시)제1항의 배당의 절차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금의 교부의 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12조, 제59조제1항 및 제60조 중 '집행법원'은 '법원'으로, 동규칙 제59조제1항 중 '부동산의 대금', 동조제2항 중 '대금' 및 동규칙 제61조 중 '매각대금'은 '법 제152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등)제1항에 규정하는 금전'으로, 동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1조 중 '각 채권자 및 채무자'는 '각 담보권자 및 재생채무자등'으로, 동규칙 제60조 중 '각 채권자'는 '각 담보권자'로, '집행비용'은 '법 제151조(비용의 부담)제3항의 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 ② 제81조(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기한등)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장 재생계획

제 1 절 재생계획의 조항

제83조(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에 관한 조항·법 제154조)

재생계획에서 공익채권 및 일반우선채권에 대하여는 장래 변제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생계획안의 제출

제84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법 제163조)

- ① 법 제163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의 말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월이내의 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재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때 재생채무자등은 당해 기간내에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변제한 재생채권등의 보고)

① 재생채무자등은 재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때(법 제164조(재생계획안의 사전 제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절차개시전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재생채권의 변제금지)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한 재생채권
 2. 법 제89조(재생채권자가 외국에서 받은 변제)제1항에 규정하는 재생채권
-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6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계획안의 조항을 보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86조(재생계획안이 사전제출된 경우의 취급·법 제164조)

- ① 재생절차개시전에 법 제164조(재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법 제135조(개시의 공고등)제2항의 서면과 병행하여 당해 재생계획안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할 수 있다.
- ② 법 제16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계획안의 조항을 보충하는 조항을 추가한 재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의 방식등·법 제165조)

- ① 법 제165조(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동의)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자본의 감소등을 정하는 조항에 관한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법 제166조)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제1항의 규정은 법 제166조(자본의 감소등을 정하는 조항에 관한 허가)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43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89조(재생계획안의 수정·법 제167조)

법원은 재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재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3 절 재생계획안의 결의

제90조(채권자집회의 속행기일지정의 신청방식등·법 제171조)

- ① 법 제171조(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재생계획안의 결의)제5항의 신청 및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행하는 동조 제7항의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②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제2항의 규정은 법 제171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서면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회답기간등·법 제172조)

- ① 법 제172조(서면에 의한 결의)제2항에 규정하는 회답기간은 동조제1항의 결정일로부터 2주간이상 3월 이하(의결권자로 일본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6주간이상 3월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② 법원으로부터 재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하기 위한 서면의 송달을 받은 의결권자는 당해 송부를 받은 서면을 이용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 ③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제2항의 규정은 법 제1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51조(대리권의 증명)의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92조(법인의 계속에 관한 신고·법 제173조)

법 제173조(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법인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정한 때 재생채무자등은 신속하게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재생계획의 인가등

제93조(법인의 계속과 재생계획인가등의 결정의 시기·법 제174조)

법 제173조(재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계속)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조(법인의 계속에 관한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때 또는 재생계획안의 가결후 상당한 기간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제94조(재생계획변경의 신청방식등·법 제187조)

- ① 재생계획의 변경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 2. 재생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이유
- ② 재생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재생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시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87조(재생계획의 변경)제2항 본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재생계획취소의 신청방식·법 제189조)

- ①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재생사건의 표시
 -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 3. 재생채무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4. 재생계획취소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이유
 - 5. 법 제189조(재생계획의 취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가지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중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이행을 받지 아니한 부분
- ② 재생계획취소를 요구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취소를 요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파산선고가 행해진 경우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의 취급·법 제190조)

법 제190조(파산선고가 행해진 경우의 취급등)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생계획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생절차의 폐지

제97조(재생계획인가전의 절차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급·법 제192조)

- ① 법 제192조(재생계획인가전의 절차폐지)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생채무자, 감독위원, 관재인 및 신고재생채권자에 대해 그 취지 및 의견이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한 일로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라면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98조(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를 하는 경우의 취급·법 제194조)

- ① 법 제194조(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폐지)의 재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재생채무자, 감독위원, 관재인 및 동항에 규정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② 기일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공고하고 동시에 확정된 재생채

권에 기하여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가지는 자 중 알고 있는 자에 대해 출석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장에 대하여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공고등)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대해, 제5조(공고사무의 취급자등) 제2항의 규정은 이 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기일에 있어서 그 연기 또는 속행에 대하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외국도산처리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제99조(외국관재인의 자격등의 증명·법 제198조등)

- ① 외국관재인의 자격은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가 係屬되는 법원 또는 인증의 권한을 가지는 자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9조(상호절차참가)제1항 단서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외국도산처리절차로의 참가의 통지·법 제199조)

- ① 재생채무자등이 법 제199조(상호절차참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신고재생채권자를 대리하여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신고재생채권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재생채권자가 재생채무자에 대한 외국도산처리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생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간이재상 및 동의재생에 관한 특칙

제 1 절 간이재생

제101조(신고재생채권자의 동의·법 제200조)

- ① 법 제200조(간이재생의 결정)제1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동시에 동항 후단의 서면(이하 이 조문에 있어서 '동의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의서에는 법 제200조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동의를 한 신고재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재생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제2항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대리권을 인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재생채무자등이 제2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재생채권자에 대해 재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 기타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법 제201조)

법 제201조(간이재생의 결정의 효력등)제2항의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재생의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의 날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간이재생의 결정의 취소에 수반하는 일반조사기간을 정하는 결정의 송달·법 제202조)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02조(즉시항고등)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법 제205조)

간이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장(재생채권) 제3절(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84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제85조(변제한 재생채권등의 보고)제2항, 제86조(재생계획안이 사전제출된 경우의 취급)제2항, 제90조(채권자집회의 속행기일 지정의 신청방식등)제2항, 제91조(서면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회답기간등) 및 제94조(재생계획변경의 신청방식등)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동의재생

제105조(간이재생에 관한 규정등의 준용·법 제206조)

① 법 제101조(신고채생채권자의 동의)제1항의 규정은 법 제206조(동의재생의 결정)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도,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06조제1항 후단의 서면에 대해서도, 제101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206조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제19조(영업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신하는 허가의 주주에 대한 송달)제2항의 규정은 법 제207조(즉시항고)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일반조사기간에서의 조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제외·법 제209조)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장(재생채권) 제3절(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84조(재생계획안의 제출시기), 제85조(변제한 재생채권등의 보고)제2항, 제86조(재생계획안이 사전제출된 경우의 취급)제2항, 제7장(재생계획) 제3절(재생계획안의 결의) 제93조(법인의 계속과 재생계획인가등의 결정시기) 및 제94조(재생계획변경의 신청방식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